

【 목 차 】

I. 계약심사제도 일반

- 1. 계약심사제도 개요 5
- 2. 계약심사 주요 성과 7

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 1. 토목공사 분야 13
- 2. 건축공사 분야 51
- 3. 설비공사 분야 113
- 4. 용역 분야 133
- 5. 물품·인쇄 분야 151

III. 부록

- 1. 경기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167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185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39

1. 계약심사제도 일반

순 서

1. 계약심사제도 개요
2. 계약심사 주요성과

1. 계약심사제도 개요

□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도, 공공기관,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

□ 계약심사제도 운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
-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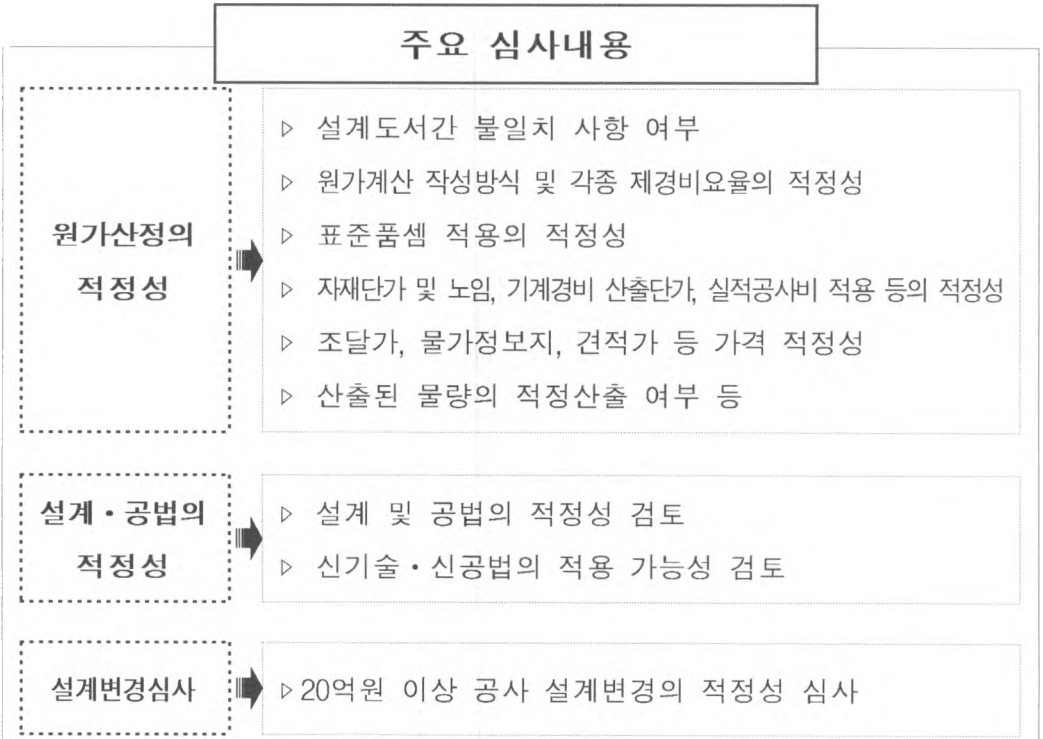
□ 계약심사 대상기관 및 사업

대상기관	심사내용	대 상 사 업
도 본청 실·과·담당관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 의회사무처 도의 지방공기업 도의 공공기관 시·군 ¹⁾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 포함)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3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원(일반·학술용역 1억원 이상) 이상 기술용역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10%이상 증액 사업

1) 시·군의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한다. 다만, 시·군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 주요 기능

- 예정가격 결정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심사
-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



□ 계약심사 제외 대상사업

-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경기도지사 정하는 사업
- ※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4조(심사제외사업)

2. 계약심사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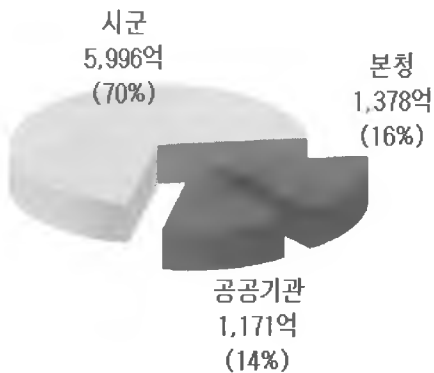
□ 예산절감액 : 8,545억원

(단위 : 억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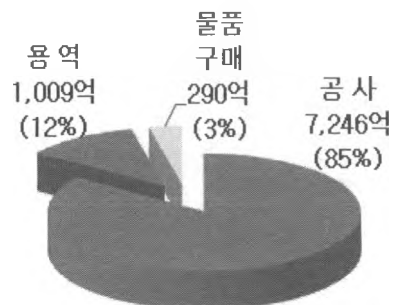
구 분	심 사 결 과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율
계	7,009	86,833	78,288	8,545	9.8
2011년	2,149	19,153	17,380	1,773	9.3
2010년	1,870	23,008	20,798	2,210	9.6
2009년	2,201	31,886	28,549	3,337	10.5
2008년	789	12,786	11,561	1,225	9.6

※ 2008년 심사기간 : 8월 ~ 12월(5개월)

□ 기관별 및 사업별 절감액



[기관별]



[사업별]

□ 2011 절감액 TOP 10

(단위 : 백만원)

연번	발주 기관	건 명	요청 금액	심사 금액	절감 금액	절 감 사 유
1	도시 공사	고덕지구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1공구)	47,378	41,448	5,930	산출근거, 수량 및 자재 단가조정
2	건설 본부	오포~포곡차도로 확·포장공사	89,790	84,058	5,732	제비율 적용, 일위대가 조정 및 실적공사비 적용
3	건설 본부	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9,294	14,692	4,602	일위대가, 수량 등 조정
4	도시 공사	고덕지구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2공구)	63,350	58,817	4,533	일위대가, 산출근거, 수량 및 자재단가 조정
5	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33,906	29,715	4,191	과다단가, 수량 조정, 실적공사비 적용
6	하남시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22,638	19,930	2,708	제비율 적용, 과다단가 수량조정
7	건설 본부	용문~단월간 도로확·포장공사	17,694	15,447	2,247	공종조정 및 거래실례가격 적용
8	남양주 시	수동면 급수관로 신설공사	13,551	11,457	2,094	일위대가, 수량조정 및 거래실례가격 적용
9	수원시	하수관거정비 단계공사 영화·화서배수분구	18,206	16,429	1,777	일위대가, 수량조정 및 거래실례가격 적용
10	건설 본부	진위역~오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13,761	12,110	1,651	중복공종 물량조정 및 동일공종 단가일원화

□ 2011 절감율 TOP 10

(단위 : 백만원/%)

연번	발주 기관	건 명	요청 금액	심사 금액	절감 금액	절감율 (%)	절 감 사 유
1	연천군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 사업(기계)	55	20	35	63.6	수량, 인건비 조정 및 거래실례가격적용
2	여성능 력개발 센터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위탁운영인쇄물	19	9	10	52.6	출력방식 효율변경 및 거래실례 가격적용
3	연천군	전통 한옥문화시설 건립공사(기계)	123	59	64	52.0	이중계상 수량조정 및 거래실례 가격적용
4	고양시	어울림축구장 보수공사	48	24	24	50.0	수량 및 단가조정
5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물품구매	55	30	25	45.5	거래실례 가격적용
6	김포시	풍무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413	224	189	45.7	공법변경 및 자재단가 조정
7	수원시	영 화천 호안생태 복원사업	1,228	688	540	43.9	수량산출오류 및 일위대가 조정
8	건설 본부	바다향기수목원조성 사후환경영향조사	271	154	117	43.2	인건비 등 조정
9	고양시	대 화축구장 보수공사	72	41	31	43.0	수량단가 조정
10	여성능 력개발 센터	도민평생 학습러닝 위탁운영인쇄물제작	39	22	17	43.6	CTP출력방식 및 거래실례 가격적용

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순 서

1. 토목공사 분야
2. 건축공사 분야
3. 설비공사 분야
4. 용역 분야
5. 물품·인쇄 분야

1. 토목공사 분야

○○교 확장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4,097백만원(도급액 3,254 관급액 843)
- 규 모 : 교량 L=72m B=24m (전체 L=710m)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3,254	2,579	675	20.7

주요 심사내용

- 가시설(시트파일) 설치 제외
 - 하천 내 교각부 시공 시 가시설(시트파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하천 상류부에 가물막이(토사 및 PP마대)를 설치하면 시트파일은 불필요하므로 제외

● 기존 교량 철거 절단 수량 조정

- 기존 교량 슬라브 절단(다이아몬드 와이어 쏘)을 2m 간격으로 설계하였으나, 절단부재 인양(크레인 150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단 간격을 6.25~7.5m(경간의 1/2씩 절단)로 조정

☞ 절단($208\text{m}^2 \rightarrow 49\text{m}^2$) : 228백만원 $\rightarrow$ 53백만원(Δ 175백만원)

■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1년)

< 심사 착안사항 >

- 현장 여건에 맞게 가시설 공법 조정
- 현장 여건 및 장비 조합에 맞게 절단수량 조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2,371백만원(도급액 1,838 관급액 533)
- 규 모 : 도로개설 L=1.18km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838	1,663	175	9.5

주요 심사내용

포장재료 분리 경계석 수량 조정

- 자전거 도로와 보도 구간의 구분을 위한 도로경계석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자전거 도로 및 보도 포장자재가 동일하므로 경계석 수량을 삭감하고 차선도색 반영 (자전거 도로 및 보도를 한꺼번에 포장 시공후 차선도색으로 구분)

☞ 경계석 : 2,234m(10,232천원) → 0m (△ 10,232천원)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1년)

〈 심사 착안사항 〉

- 포장재료 분리 경계석의 반영 적정 여부 검토

〇〇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3,520백만원(도급액 1,983 관급액 1,537)
- 규 모 : 하수처리장 5개소(21,250m³/일)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983	1,744	239	12.1

※ 시운전 129백만원 포함

주요 심사내용

흙막이 가시설 제외

- 구조물 터파기 시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하였으나 현장 확인 결과 터파기 굴착 폭 확보가 가능하므로 가시설 제외
-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이며, 공기단축의 효과가 있는 오픈 컷 공법으로 변경 적용

☞ 가시설 제외(△ 94백만원)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1년)

〈 심사 착안사항 〉

-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터파기 공법 적용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1,230백만원(도급액 1,044 관급액 186)
- 규 모 : 총인처리시설($Q=21,000\text{m}^3/\text{일}$) 1식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044	932	112	10.7

■ 주요 심사내용

● 물푸기 장비 조정

- 총인처리시설 구내배관공사 시 사용되는 물푸기용 펌프를 양정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능력이 동일하고 출력이 낮은 펌프로 교체(발전기 용량도 축소)함으로 과다 계상된 물푸기 비용 조정

☞ 펌프 : 37kW(양정 H=19m) → 22kW(양정 H=11m) (△ 6,743천원)

● 계측기 수량 조정

- 흙막이 가시설 설치시 사용되는 계측기를 경사면 터파기 구간에도 적용함에 따라 과다적용된 계측기 설치 개소 수 조정

☞ 계측기 설치 : 4개소(38,862천원) → 2개소(31,194천원 (△ 7,668천원))

■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1년)

〈 심사 착안사항 〉

-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장비 적용 검토
- 시험기기 등의 과다계상여부 검토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확충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2,635백만원(도금액 918 관금액 1,717)
- 규 모 : 총인처리시설($Q=30,000\text{m}^3/\text{일}$) 1식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918	766	152	16.6

■ 주요 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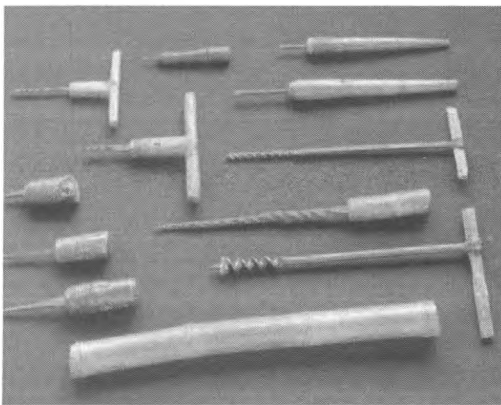
● 가시설 H-PILE 근입장 조정

-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가시설 계획과 관련하여 H-PILE 근입장($L=3.5\text{m}$)이 주변여건(지장물 저촉구간 제한적) 및 응력검토 결과(안전율이 3.22로 허용안전율 1.2의 2.7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 과다 산정
- 구조검토를 통하여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적정 근입장($L=3.0\text{m}$)으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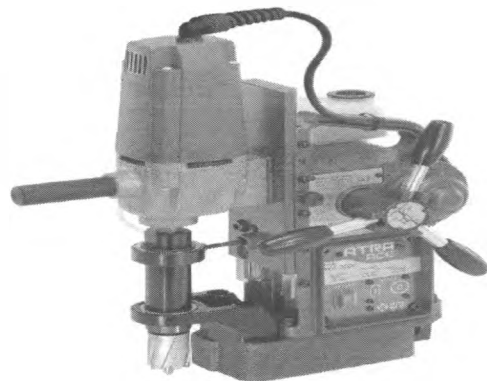
● 가시설 설치를 위한 강판구멍뚫기 단가 조정

-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30년 이전의 방법인 인력구멍뚫기로 단가를 산출하였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철강재 연결을 위한 강재 천공시 전기드릴 이용
- 시공성 및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기계(마그네틱전기드릴)뚫기로 단가 조정

☞ 강판구멍뚫기 : 공당 3,790원 → 209원 (△ 3,581원)



[인력(송곳)뚫기]



[기계(마그네틱드릴)뚫기]

■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1년)

〈 심사 착안사항 〉

-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경제성 고려 검토
-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장비 적용 검토

○○댐 하류 산책로 조성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969백만원(도급액 698 관급액 271)
- 규 모 : 산책로 L=1.09km B=4.0m (암거교량 3개소)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698	552	146	20.9

주요 심사내용

-  가물막이공법을 가배수로공법으로 조정
 - 암거교량 시공 시 단계(2단계)별로 가물막이를 2회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현장 여건상 암거교량 우회 가배수로로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므로 공법 변경
 - ☞ 가물막이공법(63백만원) → 가배수로공법(12백만원) (△ 51백만원)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1년)

〈 심사 착안사항 〉

- 현장 여건에 맞게 가시설 공법 조정

○○천 수해복구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2,317백만원(도급액 2,209 관급액 108)
- 규 모 : 하천 수해복구 L=1.58km, 호안공 A=11,870m²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209	1,819	390	17.7

■ 주요 심사내용

● 호안블럭설치 노임 조정

- 하천 호안 정비를 위한 환경식생호안블럭 설치 노임 산출시 설치하는 호안블럭의 규격에 맞는 적절한 인부량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기존 규격에 맞지 않는 설치 인부량을 산출하여 적용함으로써 과다 계상된 노임 조정

☞ 호안블럭설치 : m² 당 24,622원 → 11,868원 (△ 12,754원)

● 성토면고르기 중복품 제외

- 흙쌓기 및 성토법면 다짐시 성토면 고르기가 기 반영되어 중복 계상된 성토면 고르기 품 제외

■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1년)
- 하천공사설계 실무요령(2007년)

〈 심사 착안사항 〉

- 기초 단가 산정시 규격에 맞는 적정 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 하천 제방 공사시 성토면은 흙쌓기 및 다짐시 성토면 고르기가 반영된 것을 고려하여 검토

○○천 수해복구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2,144백만원(도급액 1,527 관급액 617)
- 규 모 : 하천 수해복구 L=0.6km, 교량 2개소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527	1,031	496	32.5

■ 주요 심사내용

- 가배수관 자재 조정
 - 하천 내 교량 가설을 위한 가도 설치구간은 차량통행 및 이동하중이 적은 배수관 설치 및 철거에 있어 구조적으로 동등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을 경제적인 파형강관으로 조정
 - ☞ 가도설치 : m당 288,683원(흙관) → 59,547원(파형강관) (△ 229,136원)

전석쌓기 품 조정

- 표준품셈의 전석쌓기 품에는 채움콘크리트 등 타설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품셈에 맞는 단가 적용
 - ☞ 전석쌓기 : m² 당 100,738원 → 47,792원 (△52,946원)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1년)

< 심사 착안사항 >

- 현장 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 적용 검토
- 공종별 표준품셈 내용 확인

국도○호선 우회도로 법면 수해복구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1,017백만원(도금액 921 관금액 96)
- 규 모 : 도로법면 보강 및 식생블럭설치 공사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921	809	112	12.2

주요 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적합한 장비조합 적용
 - 비산먼지발생 방지를 위한 세륜세차시설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 반영하여야 하나 도로법면공사 현장 여건을 고려하면 세륜세차시설 설치가 불필요하므로 시설 제외(△ 8,044천원)



〈수해복구공사 대상지〉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1년)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08년)

〈 심사 착안사항 〉

- 세륜세차시설의 설치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검토

○○○테마공원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비 : 3,054백만원(도금액 2,113 관금액 941)
- 규 모 : 포장공 17,135㎡, 조경공(생태연못, 조경식쌓기) 등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113	1,528	585	27.7

■ 주요 심사내용

● 단지내 포장계획 조정

- 교통하중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과다 설계된 포장계획을 현장 실정에 맞는 단면으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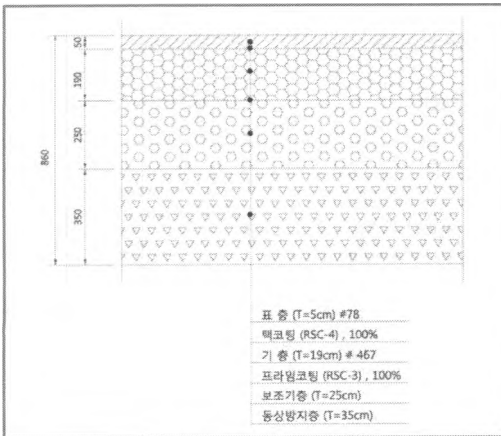
☞ 포장계획 : 표층(5cm)+중간층(6cm)+기층(19cm)+보조기층(25cm)+동상방지층(35cm) → 표층(5cm)+기층(19cm)+보조기층(10cm)

※ 부지조성 및 보조기층 일부 포장이 완료된 현장여건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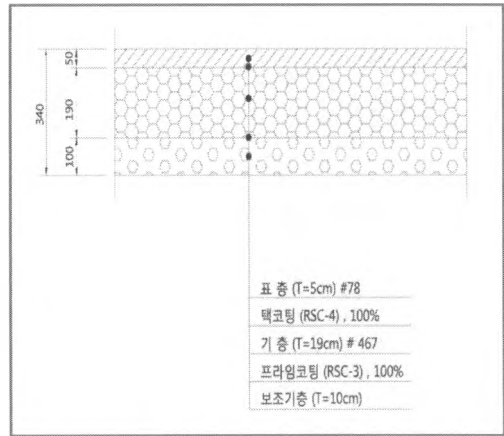
중복 반영된 자재 조정

- 생태연못, 계류 등의 시공에 있어 중복 반영된 부직포 수량 제외

부직포 : 2,280㎡ → 0㎡ (△ 3,146,400원)



[당초 포장계획]



[조정 포장계획]

법규 및 적용기준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08년)

< 심사 착안사항 >

- 현장 여건에 적합하고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경제적 포장 단면 검토
- 산출근거 및 단가 중복여부 검토

○○동 하수관거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11,476백만원(도금액 7,706 관금액 3,770)
- 규 모 : 오·우수관 교체 및 신설 L=19.23km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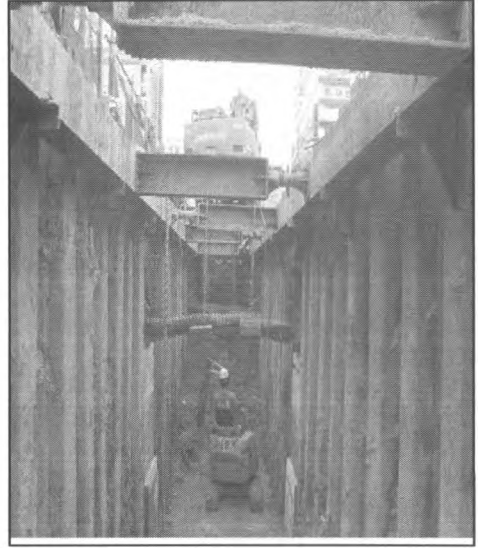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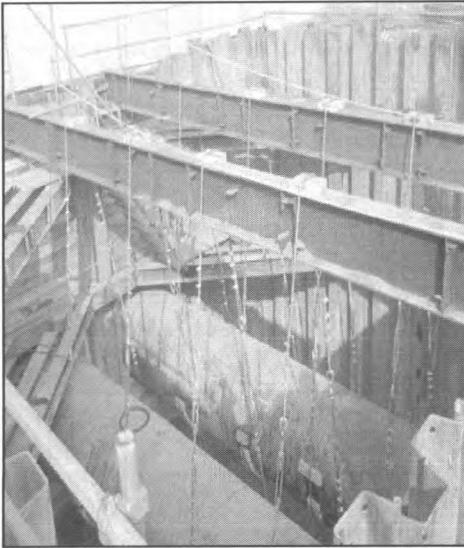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7,706	7,080	626	8.1

■ 주요 심사내용

● 지장물 보호공 자재 수량 조정

- 지장물보호공 설치시 사용되는 H-형강을 보호공 전체 연장(L=4,850m)에 해당하는 수량을 계상하였으나, 권역별 1일 작업량(6권역×30m/일=180m/일)에 소요되는 H-형강 수량만 계상하여 재사용하는 것으로 조정

☞ H-형강 : 638ton(353,576천원) → 23ton(286,674천원) (△ 66,902천원)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1년)

〈 심사 착안사항 〉

- 가설에 사용되는 자재 수량 산정시 자재의 재사용 가능여부 검토

○○동 낙조정원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800백만원(도급액 545, 관급액 141, 위탁비 114)
- 규 모 : 낙조전망대 15m, 낙조데크 132m, 부대공1식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545	461	84	15.4

■ 주요 심사내용

- H형강 부재 철골가공조립에 대한 제작용 과다계상
 - 낙조 관망대 설치에 대한 H형강부재 철골가공조립시 공장 생산제품의 강제 총사용량은 기본 철골공수를 설계 반영 하여야 함에도 기본값 반영 없이 설계내역에 포함하여 내역 산출
 - H형강 부재 60톤 미만의 경우 기본철골공수는 기본철골 공수×0.71로 산정하므로 7.45인을 5.28인으로 변경 적용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1년)

〈 심사 착안사항 〉

- 건설품셈 적용시 적정 요율 반영여부 검토
- 부속 기자재에 대한 가공작업(현장, 공장) 적용방법 적극검토

○○시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324백만원(도금액 317 관금액 7)
- 규 모 : 체육관조성공사(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222m²)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317	168	149	47.0

주요 심사내용

지하터파기 굴착 방법 변경

- 지하터파기 굴착방법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따라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법을 설계에 적용하여야 함에도 고가의 지하굴착 가시설공법을 적용
- 주변시설물 간섭 및 지하수위 영향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오픈컷 굴착공법으로 변경 적용(△ 133,8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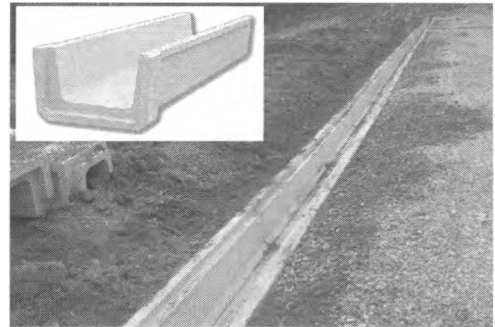
● U형측구 설치방법 변경

-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를 경제성, 시공성이 양호한 공장 제작 기성제품으로 조정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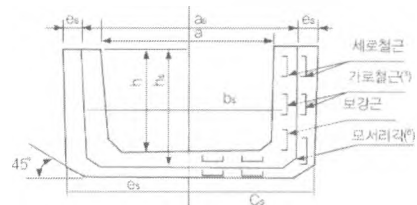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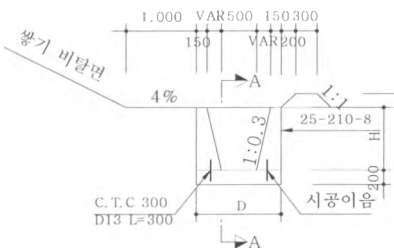
☞ U형측구 : m당 85,440원 → 53,922원 (△ 31,518원)



〈현장타설콘크리트 측구〉



〈공장제작콘크리트 측구〉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1년)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08년)

〈 심사 착안사항 〉

-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굴착공법 적용검토
- 시설물의 기능성, 경제성, 시공성등에 대한 종합적 접근방법필요

○○리 배급수관 매설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347백만원(도급액 208 관급액 139)
- 규 모 : 배수관 L=1.405km, 급수관 L=1.019km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08	155	53	25.5

주요 심사내용

- 소규모포장복구(아스콘,콘크리트) 중복품 제외
 - 소규모포장복구 품에는 굴착, 골재포설 및 다짐 등의 토공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하여 계상된 토공품을 제외하여 반영
- ☞ 소규모포장복구 : 40,853천원 → 13,256천원 (△ 27,597천원)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1년)

〈 심사 착안사항 〉

- 포장복구에 대해 적정 품셈 적용여부 및 중복 계상 여부 검토

○○동 농수로정비사업(특화공모사업)

사업개요

- 사업비 : 1,600백만원(도급액 768, 관급액 138, 위탁비 694)
- 규 모 : 방호벽 L=570m, 낙엽관목 3,085주, 지피류 2,440본, 데크 등 15종설치, 규사블럭 1,914m².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768	606	162	21.1

주요 심사내용

- 위탁사업비를 설계내역에 반영계상
 - 군용 병커 리모델링 사업비가 ○○재단 위탁사업임에도 위탁사업비를 설계내역에 포함하여 반영 적용
 - 선정된 재료 시공에 있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치품을 반영하여야 하나, 특허품인 고가의 규사블럭 설치품(실적단가)을 적용하여 건설표준품셈의 보도블럭 설치품으로 변경
 - ☞ 규사블럭(9,302원/m²:실적단가) → 보도블럭(3,795원/m²:품셈) (△ 5,507천원)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1년)

〈 심사 착안사항 〉

- 민간위탁 사업비의 설계내역 반영 여부 적극검토
-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일반 보도블럭설치품 적용 검토

○○지구 농업생산기반조성 실시설계

사업개요

- 사업비 : 3,967백만원(도금액 3,967)
- 규 모 : 단지조성 $A=7,684\text{m}^2$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3,967	3,500	467	11.8

주요 심사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 계획인구에 따른 보정계수 조정
 - 보정계수 산출 시 계획인구를 ○○시 전체 계획인구인 75만명을 적용하였으나 사업지구 계획인구인 1.892만명(기준 5만명)으로 적용하여 산출함(보정계수 5.078→0.558)
 - ☞ 도시관리계획 수립 : 448백만원→339백만원 (△ 109백만원)

● 경관성 검토 : 작업량 보정계수 조정

- 보정계수 산출 시 사업지구 면적 7,684천 m^2 을(기준 10만 m^2) 적용하였으나 계획인구 1.892만명(기준 30만명)으로 적용하여 산출함(보정계수 13.531→0.191)
- 경관현황조사분석, 경관종합분석, 도시경관기본구상 등은 기본계획 수립 시 수행한 경관계획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내역서에서 제외

☞ 경관성 검토 : 254백만원→75백만원 (△ 179백만원)

법규 및 적용기준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2007년)

< 심사 착안사항 >

-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작업량 산정
- 기 수립한 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 활용

시도○○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개요

- 사업비 : 1,279백만원(도금액 1,279)
- 규 모 :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L=6.6km, B=12m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279	1,196	83	6.5

주요 심사내용

- 조사측량비 조정
 - 노선측량품에 기본측량의 삼각점 및 수준점과의 위치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비 제외 적용
- 토질조사비 조정
 - 보링공의 제경비 및 기술료 산출시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만 적용하고 보링공, 특수인부, 보통인부의 인부임은 제외(△ 28,483천원)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1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7호)

〈 심사 착안사항 〉

- 조사측량(노선측량)의 적정품셈 적용여부 및 중복 계상 여부 검토
- 토질조사(보링) 제경비에 대한 중복 계상 여부 검토

○○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 사업비 : 1,237백만원(도금액 1,237)
- 규 모 : 비점오염저감시설 Q=13,000톤
유입관거 D600~700 L=1.1km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237	826	411	33.2

■ 주요 심사내용

- 적용분야 효율조정(플랜트→건설)
 - 하수도분야보조금편성집행관리실무요령(환경부)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건설부분 효율(2.97%)적용 및 수질조사 분석비 비점오염저감시설의설치및운영 매뉴얼(환경부)변경 적용
 - ※ 비점오염 저감시설의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표31(볼투수지역에서 시료채취 조건 및 주기) 선행건기일수 3일이상
 - 시료채취 횟수 강우초기(1시간) : 유출직전, 5분, 10분, 15분, 30분, 60분(6회)
강우종기(종료시): 적정시간 간격(4~6회)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1년)
- 하수도분야보조금편성집행관리실무요령(환경부)
- 수질조사 분석 비점오염저감시설의설치및운영 매뉴얼(환경부)

〈 심사 착안사항 〉

-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용(플랜트/건설)시 정부의 보조금편성 실무요령에 근거한 해당 부분의 적정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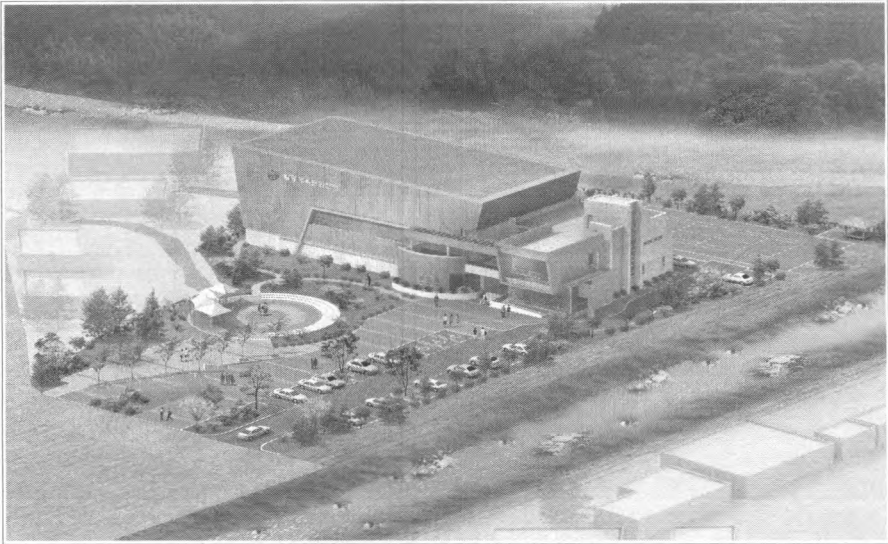
2. 건축공사 분야

○○체육문화센터 신축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2,831백만원(도금액 2,597 관급 234)
- 규 모 : 지상 2층, 연면적 1,668.41m²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1개월

< 조 감 도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597	2,205	392	15.1

주요 심사내용

중복과다계상 조정

- 금속공사 알루미늄 지붕재 설치비에 그라스울판넬설치비가 중복 적용되어 삭감 조정
- 조적공사 벽돌소운반은 벽돌쌓기 실적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어 삭감하여 조정

표준품셈 일위대가 적용 조정

- 금속공사 핸드레일 및 난간설치를 잡철물제작과 난간 설치로 구분하여 일위대가를 적용하였으나 표준품셈의 잡철물제작설치로 일위대가 조정

국토해양부 실적공사비 적용

- 철근현장가공 및 조립 : 430,181원/㎡ → 376,063원/㎡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거래실례가격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공종별 표준품셈 내용 확인
- 산출 수량의 중복여부 등 과다 수량 확인

○○U-city 통합운영센터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4,977백만원(도급액 3,830 관급 1,129 폐기물 18)
- 내 용 : 지상 5층(지하 1층), 연면적 4,513.06㎡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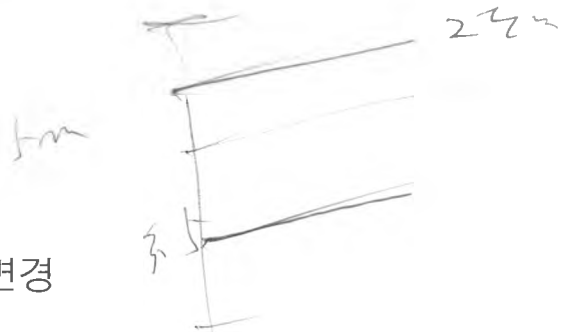
< 조 감 도 >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3,830	3,301	529	13.8



주요 심사내용

● 현장시공여건에 따른 공정 변경

- 가설공사 수평내부비계를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적절한 시공성을 판단하여 조립말비계(100m²당 1대)로 변경하여 적용

표준품셈 적용 조정

- 가설공사 강관동바리 설치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성을 위하여 높이 2m이내 마다 격자로 설치하는 수평 연결재를 보강하도록 하는데 5m이하에 대해서는 2단 보강이 아니라 1단보강 이므로 1단 삭감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설계도서 및 현장실정을 숙지하여 적절한 공정이 반영되도록 유의
- 공종별 표준품셈 내용 확인

○○시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5,306백만원(도금액 4,313 관급 993)
- 규 모 : 지상 4층(지하 3층), 연면적 4,350.70㎡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조 감 도 >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4,313	3,736	577	13.4

주요 심사내용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공정 적용

- 가설공사 건축물현장정리 RC조 4,302m²를 철골조 2,772.56m²와 RC조 1,528.95m²로 수량 재산출하여 적용

불필요한 공정 조정

- 미장공사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2,428m²에 대해 수량 재산출하여 암면뽐칠 및 유리면흡음판설치 부분 물량 1,844m² 제외하고 시멘트페이스트 바름을 콘크리트 면처리로 변경하여 적용

거래실례가격 적용

- 후로링바닥깔기 : 178,215원/m² → 162,500원/m²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거래실례가격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설계도서와 내역서간 수량이 일치하도록 확인
- 해당 공종의 내용 이해 및 숙지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유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개요

- 사업비 : 2,360백만원(도금액 2,126 관급 234)
- 규 모 : 지상 3층, 연면적 2,647.51㎡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조 감 도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126	1,839	287	13.5

주요 심사내용

거래실례가격 적용

- 창호공사 불소코팅 커튼월바 등 10종 공사단가를 거래실례 가격으로 조정(81백만원/식 → 42백만원/식)

과다설계 수량 조정

- 판넬 및 홈통공사 지붕 및 외장재 물량중 벤딩과 비벤딩 구간을 분리하여 수량 재산출 조정(988㎡ → 벤딩435㎡, 비벤딩 553㎡)

공정에 적합한 일위대가 적용

- 판넬 및 홈통공사 GUTTER설치(SST)에 대해 일위대가를 재산출 적용하여 조정(162,200원/m → 67,945원/m)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중복 과다설계 공종 확인
- 견적단가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재조사

○○동 구청사 리모델링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799백만원(도금액 749 관급 50)
- 규 모 :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96.85m²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749	582	167	22.3

주요 심사내용

현장 시공여건 반영

- 금속공사 2층옥상 방부목 바닥틀의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설치 일위대가의 잡철물제작설치를 잡철물설치로 적용하여 조정

거래실례가격 적용

- 인테리어필름 : 29,000원/㎡ → 26,000원/㎡
- 우레탄방수(벽3mm,노출) : 39,982원/㎡ → 26,100원/㎡
- 탄소섬유보강 : 127,550원/㎡ → 126,000원/㎡

표준품셈 일위대가 적용 조정

- 수장공사 열반사단열재 일위대가의 인력품을 표준품셈 방습필름설치 적용
 - 내장공 0.08인/㎡ → 방수공 0.009인/㎡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거래실례가격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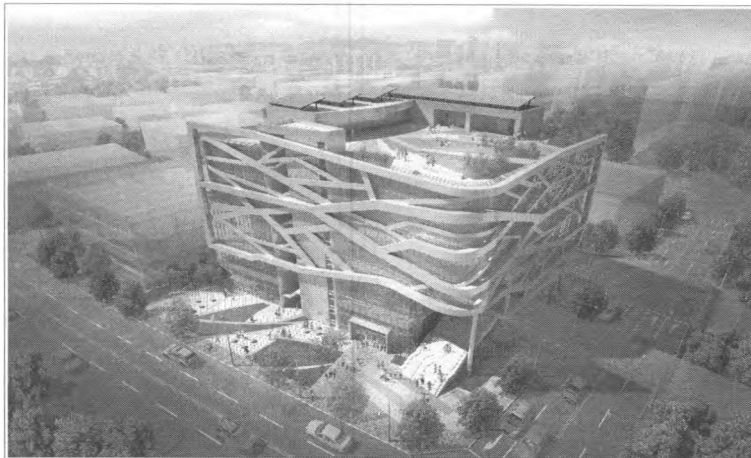
- 공종별 표준품셈 확인
- 표준품셈의 내용을 숙지하여 인건비 과다계상 예방

○○시 아트홀 건립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10,216백만원(도금액 8,180 관급 2,036)
- 규 모 : 지상 5층(지하 2층), 연면적 8,579.20㎡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9개월

< 조 감 도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8,180	7,380	800	9.8

주요 심사내용

- 거래실례가격 공정 표준품셈 적용
 - 견적서상의 일위대가에 대해 표준품셈 적용하여 재산출
 - 대공연장 건축음향공사 : 765백만원/식 → 641백만원/식
- 트럭크레인 수량 조정
 - 철골공사 트럭크레인(20톤)에 대해 표준품셈의 일일 처리 능력 15톤으로 사용수량 재산출하여 조정
- 불필요 공정 조정
 - 철골공사 신재 사용시 샌드브라스트는 불필요하므로 제외하여 조정($2,197\text{m}^2 \rightarrow 0\text{m}^2$)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공종별 표준품셈 내용 확인
- 현장여건을 고려한 불필요 공정 확인
- 견적서상의 일위대가에 대해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재산출

○○시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사업개요

- 사업비 : 2,330백만원(도급액 2,050 관급 280)
- 규 모 :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369.00m²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1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050	1,764	286	14.0

주요 심사내용

중복적용 공정 조정

- 수장공사 악세스후로아는 전도성타일 마감제품 시공도로 별도 전도성타일 붙임 비용 삭감
- 117,329원/ m² → 89,280원/ m²
- 금속공사 징크설치 공사단가에 구조용 각파이프를 설치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감하고 일위대가의 경량형강 철골조조립설치는 잡철물설치로 변경하여 적용

거래실례가격 적용

- 시공자재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 그을림한식기와 여와 : 2,400원/매 → 1,850원/매
 - 그을림한식기와 여막새 : 7,200원/매 → 5,550원/매
 -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 115,000원/㎡ → 89,280원/㎡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물가조사기관 공표 단가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재조사
- 설계도면 및 현장실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과다계상 및 중복공정예방

○○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2,418백만원(도급액 2,242 관급 174 사급 2)
- 규 모 : 지상 2층(지하 1층), 연면적 1,441.09m²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 조 감 도 >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242	1,922	320	14.3

주요 심사내용

● 개정 표준품셈 미적용

- 한옥공사에 대해 개정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2011. 4)을 적용하여 재산출

● 노무비 할증 부적정

- 목공사 조립 및 치목시 할증된 10%의 자재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할증된 노무비 삭감하여 조정

● 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 조정

- 목공사 바닥장선깔기 수량을 수량산출서에 의거 404m²에서 135m²로 조정 및 일위대가 노무비품을 마루틀설치 품으로 적용하여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거래실례가격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적용 법규 및 표준품셈의 개정 등 확인하여 심사
- 표준품셈의 내용을 숙지하여 자재비 과다계상 예방

○○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내 관리동 건설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4,546백만원(도금액 3,934 관급 612)
- 규 모 : 지상 2층(지하 1층), 6개동 연면적 1,849.61m²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3,934	3,361	573	14.6

주요 심사내용

거래실례가격 적용

- 시공단가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 유리공사 유리주위코킹, 웨더코킹 노무비 품은 유리 끼우기 및 닦기 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하여 조정
 - 무늬코트 : 12,000/ m² → 5,360m²
 - FRP정화조 : 7,710,000/ 개소 → 6,800,000/ 개소
 - 이페목재테크 : 160,036/ m² → 134,595/ m²

●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공정 적용

- 토 및 지정공사 보통암의 소형브레이커+백호를 대형브레이커+백호0.7M3로 조정하여 적용
- 도장공사 비닐페인트 천정의 올퍼티를 줄퍼티로 조정 및 가격정보의 거래실례가격 적용

■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및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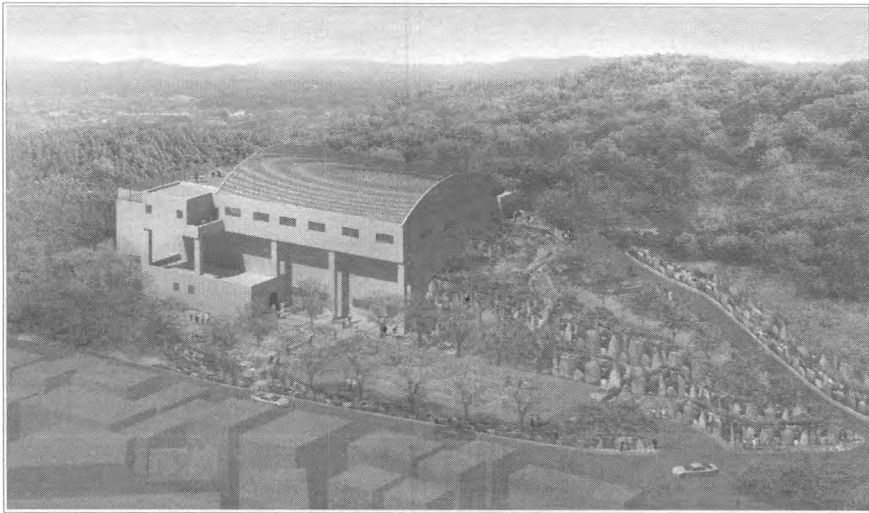
- 설계도면 및 현장실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과다계상 예방
- 물가조사기관 공표 단가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재조사

○○시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2,181백만원(도급액 1,631 관급 550)
-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1,496.14m²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

< 조 감 도 >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631	1,417	214	13.1

주요 심사내용

거래실례가격 적용

- 시공단가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 경량철골천정틀(M-BAR H:1m미만, 인서트유)
: 20,285원/㎡ → 16,220원/㎡
 - AL 방충망(미서기,후레임포함), 불소수지
: 30,400원/㎡ → 22,540원/㎡
 - 화강석붙임(벽,건식) 600*400 버너30mm 포천석, 코킹포함 :
116,883원/㎡ → 87,263원/㎡

중복 공정 적용 조정

- 목공사 바닥후로링공사 일위대가의 먹메김 노무비품은
가설공사 적용되어 있으므로 제외하여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및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다 적용된 작업방법 변경
- 해당 공종의 내용을 숙지하여 일위대가 산정에 반영

○○군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6,006백만원(도금액 4,996 관급 1,010)
- 규 모 : 지상 2층(지하 1층), 연면적 5,715.93m²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4,996	4,446	550	11.0

주요 심사내용

원가계산 제비율 산정 부적정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각종 경비요율 조정
 - 간접노무비 : 11.5% → 8.4%(감 3.1%)
 - 국민건강보험료 : 1.59% → 1.7%(증 0.11%)
 - 국민연금보험료 : 2.48% → 2.49%(증 0.01%)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58% → 0.069%(증 0.011%)

● 중복과다계상 조정

- 가설공사 강관동바리 설치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성을 위하여 높이 2m이내 마다 격자로 설치하는 수평 연결재를 보강하도록 하는바 5m이하에 대해서는 2단 보강이 아니라 1단 보강이므로 1단 삭감

● 표준품셈 일위대가 적용 조정

- 철골가공조립(적은구조) Rolled shape, 100ton이상에 대해 표준품셈 일위대가 적용 조정(475,414원/톤 → 436,388원/톤)

■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원가 계산시 적용되는 각종 제비율 기준 확인
- 해당 공종의 내용 이해 및 숙지하여 가설재의 중복 계상 방지

○○소방서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3,823백만원(도급액 2,986 관급 837)
- 규 모 :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4,872.52㎡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조 감 도 >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986	2,640	346	11.6

주요 심사내용

가설공사(보호막 설치, 내부수평비계) 조정

- 보호막설치의 경우 제경비에 계상되는 안전관리비에서 집행 가능함에도 별도계상하여 삭감 조정
- 설계내역 작성시 일상적으로 내부 마감 작업용 수평비계 (말비계)를 연면적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건물 전체면적에 설치하고 있지 않는 현실과 효율적인 대체공법 등을 검토하여 연면적 100㎡당 이동이 가능한 조립말비계로 변경 적용하여 조정

알루미늄 창호 관급자재 전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알루미늄 창호 관급자재 전환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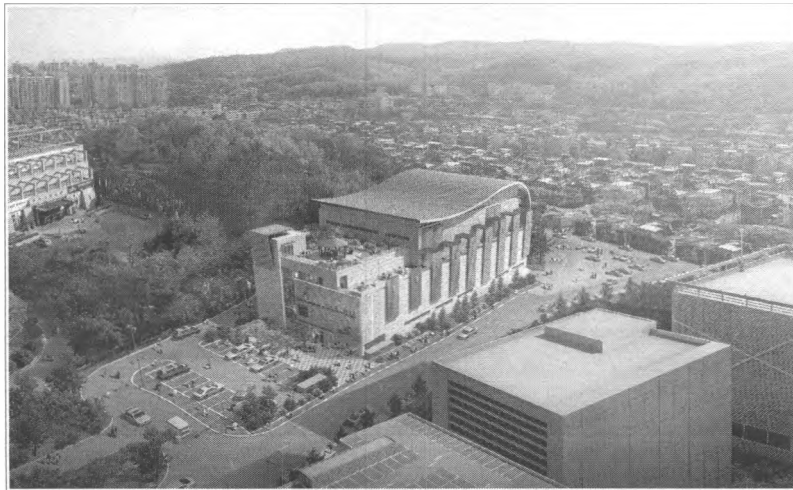
- 관련법령의 숙지를 통해 불필요한 사급자재 공급 방지
- 해당 공종의 내용 이해 및 숙지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유의

○○시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13,370백만원(도급액 9,025 관급 4,345)
- 규 모 : 지상 3층(지하 2층), 연면적 7,967.39㎡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조 감 도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9,025	8,285	740	8.2

주요 심사내용

공정별 견적처리 단가적용 조정

- 견적처리된 공정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함에 따라 재료비로 일괄계상 처리

표준품셈 일위대가 적용 조정

- 철골가공조립(적은구조) Rolled shape, 60ton이상에 대해 표준품셈 일위대가 적용 조정(567,555원/톤 → 498,759원/톤)

핸드레일(계단)설치 인건비 이중 계상 조정

- 핸드레일 설치공종은 일반철재류의 잡철물제작설치로 계상되어야 하나 잡철물제작설치 + 난간설치로 이중 계상되어 난간설치비를 삭감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표준품셈의 내용을 숙지하여 인건비 과다계상 예방
- 해당 공종의 내용 이해 및 숙지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유의

○○도서관 건립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2,952백만원(도금액 2,381 관급 571)
- 규 모 : 지상 3층, 연면적 2,010.21m²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381	2,117	264	11.1

주요 심사내용

- 가설공사(보호막 설치, 내부수평비계) 조정
 - 설계내역 작성시 일상적으로 내부 마감 작업용 수평비계(말비계)를 연면적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건물 전체면적에 설치하고 있지 않는 현실과 효율적인 대체 공법 등을 검토하여 연면적 100m²당 이동이 가능한 조립 말비계로 변경 적용하여 조정

- 보호막 및 쓰레기슈트의 경우 제경비에 계상되는 안전 관리비에서 집행 가능함에도 별도계상하여 삭감 조정
- 거레실레가격 적용
 - 시공단가에 대하여 거레실레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 레진징크판넬 : 189,000원/m³ → 161,000원/m³
- 자재운반장비 이중계상 조정
 - 주요공정별 비용에 소운반비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인화물용리프트 비용을 계상함에 따라 삭감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표준품셈의 내용을 숙지하여 운반장비 등 기계장비 과다계상 예방
- 해당 공종의 내용 이해 및 숙지하여 가설재의 중복 계상 방지

○○도서관 실시설계 용역

사업개요

- 사업비 : 312백만원
- 규 모 : 도서관 건립 설계(연면적 4,000m²)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312	272	40	12.8

주요 심사내용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조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59호, 2009. 9.2) 제6조제5항제1호 규정에 따라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조정
 - 중간설계 : 25% → 30%(증 5%)
 - 실시설계 : 60% → 50%(감 10%)

● 추정공사비 산출

- 설계용역비 산출의 기초 금액인 공사비를 동일용도 건축물 평균공사비 사례조사를 통해 추정공사비 조정
 - 추정공사비 : 6,500백만원(1,625천원/m²)
→ 6,068백만원(1,517천원/m²)

● 불필요한 경비 조정

- 건축법 제2조 및 건축사법 제2조의 건축설계는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구분되므로 손해보증보험료 적용대상에서 제외

■ 법규 및 적용기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심사 착안사항 >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적합한 대가 요율 적용 검토

○○청사 다기능 시스템창호 교체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1,031백만원(도급액 405 관급액 626)
- 규 모 : 기존창호 교체(163개소), 화강석붙임 315m³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405	346	59	14.6

■ 주요 심사내용

- 거래실례가격 적용
 - 시공단가에 대하여 조달청 시공가격 적용
(화강석붙임 : 102,687원/m² → 55,000원/m²)
- 수량 산출면적에 대한 미할증 적용
 - 단열재, 석고판, 벽체합판붙임, 몰딩 설치의 경우 할증된 수량을 설계내역에 반영함에 따라 미할증 수량으로 조정

● 원가계산 제비율 산정 부적정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일반관리비 적용요율을 6%에서 5.5%로 조정

■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및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원가 계산시 적용되는 각종 제비율 기준 확인
- 표준품셈 기준에 의한 수량 산출로 재료비 과다 계상 방지

○○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업개요

- 사업비 : 751백만원
- 규 모 : 기념관 및 관리동 건립 설계(연면적 6,980㎡)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751	590	161	21.4

주요 심사내용

추정공사비 산출

- 설계용역비 산출의 기초 금액인 공사비를 조달청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를 통해 추정공사비 조정
 - 추정공사비(기념관) : 15,700백만원(2,473천원/㎡)
→ 15,305백만원(2,399천원/㎡)
 - 추정공사비(관리동) : 922백만원(1,538천원/㎡)
→ 951백만원(1,586천원/㎡)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조정

- 동 사업의 경우 별도의 용역을 통해 민주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어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59호, 2009. 9.2) 제6조제5항제1호 규정에 의한 일괄수행시 업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요율만을 적용(계획설계 20% 제외)
 - 중간설계 30%, 실시설계 50% 적용

법규 및 적용기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심사 착안사항 〉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적합한 대가 요율 적용 검토

○○구 보건소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7,409백만원(도급액 5,809 관급액 1,600)
- 규 모 : 지하1~지상4층, 연면적 5,746㎡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5,809	5,184	625	10.8

■ 주요 심사내용

- 거래실례가격 적용
 - 석공사의 화강석 붙임(바닥, 잔다듬30mm) 공사단가를 조달청 시공가격으로 조정 (76,398원/㎡ → 31,390원/㎡)
 - 외장공사의 알루미늄쉬트패널 설치 공사비를 조달청 시공가격으로 조정
(115,000원/㎡ → 94,500원/㎡)

● 중복과다계상 조정

- 알루미늄 쉬트패널(현장설치도) 비용의 경우 하부강재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설계내역에 별도의 하부강재 설치비용 계상되어 삭감 조정(123,206,836원 삭감)

● 핸드레일(계단)설치 인건비 이중 계상 조정

- 핸드레일 설치공종은 일반철재류의 잡철물제작설치로 계상되어야 하나 잡철물제작설치 + 난간설치로 이중 계상되어 난간설치비를 삭감 조정

■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및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가격정보(건적 등) 및 표준품셈 기준을 통해 반영된 공정에 대하여 조달청 시공가격 적용
- 설계도면 및 현장실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과다계상 예방

○○구 보건소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5,000백만원(도급액 4,455 관급액 545)
- 규 모 : 지상 4층(지하 1층), 연면적 4,066.96㎡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4,455	3,796	659	14.8

■ 주요 심사내용

- 중복 또는 과다 계상된 수량 조정
 -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된 현장보양, 이동식강관말비계, 가설등 설치등은 본 공사 공통가설공사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삭감 조정
 - 갈바철판의 경우 별도의 녹막이페인트칠이 불필요함에 따라 일위대가상 녹막이페인트칠 삭감 조정

- 가설공사 강관동바리 설치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위하여 높이 2m이내 마다 격자로 설치하는 수평연결재를 보강하도록 하는데 5m이하에 대해서는 2단보강이 아니라 1단보강 이므로 1단 삭감
- 자재운반장비 이중계상 조정
 - 주요공정별 비용에 소운반비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하이드로크레인 비용을 계상함에 따라 삭감 조정
- 알루미늄 창호 관급자재 전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알루미늄 창호 관급자재 전환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거래실례가격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설계도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다 설계여부 확인
- 관련법령의 숙지를 통해 불필요한 사급자재 공급 방지

○○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2,829백만원(도금액 2,520 관금액 309)
- 규 모 :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1,757.80m²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520	2,205	315	12.5

■ 주요 심사내용

- 중복 또는 과다 계상된 수량 조정
 - 가설공사 강관동바리 설치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성을 위하여 높이 2m이내 마다 격자로 설치하는 수평연결재를 보강하도록 하는바, 5m이하에 대해서는 2단 보강이 아니라 1단 보강이므로 1단 삭감

● 핸드레일(계단)설치 인건비 이중 계상 조정

- 핸드레일 설치공종은 일반철재류의 잡철물제작설치로 계상되어야 하나 잡철물제작설치 + 난간설치로 이중 계상되어 난간설치비를 삭감 조정

● 거래실례가격 적용

- 석공사의 화강석 붙임(바닥, 버너30mm) 공사단가를 조달청시공가격으로 조정 (101,328원/㎡ → 59,833원/㎡)
- 버스자동세차기에 대해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195,000천원/㎡ → 160,000천원/㎡)

■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거래실례가격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설계도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다 설계여부 확인
- 거래실례가격 조사 및 조달청 시공가격 적용을 통한 시공비 절감

○○○ 도서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3,591백만원(도금액 3,117 관급 474)
- 규 모 : 지상 5층(지하 1층), 연면적 2,893.20m²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조 감 도 >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3,117	2,626	491	15.8

주요 심사내용

재료의 할증율 조정

- 라임스톤 붙임(외벽)의 재료 할증율 적용이 부적정 하여 표준 품셈에 의거 삭감 조정(10%→3%)

품셈적용 부적정 조정

-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설치 m²당 수량의 표준품셈 적용이 부적정하여 조정(2m² →1.1m²)

제작비 이중계상 조정

- 목재데크 하지철물의 재료비 적용시 제작단가 포함되어 잡철물 제작 설치를 잡철물 설치로 변경 적용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표준품셈관리규정

〈 심사 착안사항 〉

- 공종별 표준품셈 내용 확인
- 해당 공종을 정확히 숙지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유의

○○○○ 행궁권역 정비사업

사업개요

- 사업비 : 466백만원(도금액 466)
- 규 모 : 지상 1층 초가 3동, 연면적 165.51m²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466	362	104	22.3

주요 심사내용

- 거레실레가격 적용
 - 시공단가에 대하여 거레실레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 이영 잇기(3겹잇기, 5단) : 282,664원/m² → 127,590원/m²

● 품셈적용 부적정 조정

- 구들공사의 재래식 온돌 놓기 장작 수량의 문화재 표준품셈 적용이 부적정하여 조정(1.1지게/㎡ → 0.5지게/㎡)
- 바닥 삼화토 다짐 보통인부에 대한 문화재 표준 품셈 적용이 부적정하여 조정(1.9인/㎡ → 1인/㎡)

❏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공종별 표준품셈 내용 확인
- 물가조사기관 공표 단가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재조사

○○○○ 유적 정비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700백만원(도금액 700)
- 규 모 : 99,687m²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700	534	166	23.7

주요 심사내용

- 소운반 및 속도 현장여건 반영
 - 자재반입 소운반(인력운반)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운반거리 : 150m → 40m
 - 운반속도 : 불량 → 보통(2000m/hr → 2500m/hr)

● 품셈적용 부적정 조정

- 석재해체의 문화재 표준품셈 적용이 부적정하여 조정
 - 석공 1.7인/㎥ → 0.1인/㎥ 보통인부 1.3인/㎥ → 1.1인/㎥

❏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심사 착안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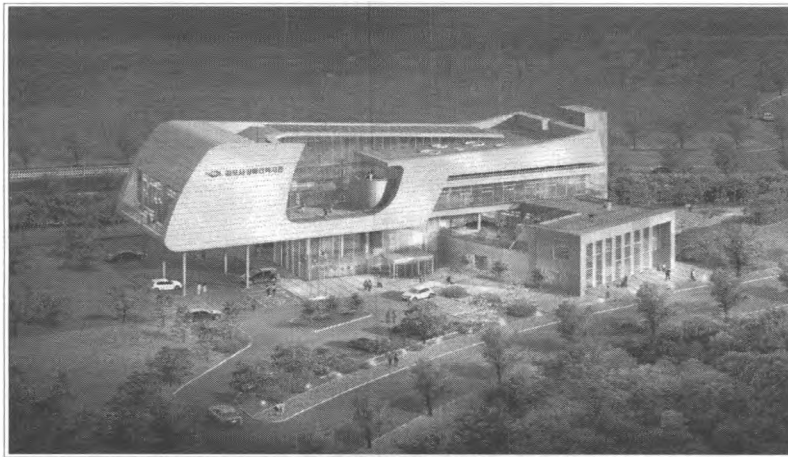
-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의 일치여부 확인으로 과다계상 예방
- 표준품셈의 내용을 숙지하여 인건비 과다계상 예방

○○시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4,978백만원(도금액 4,004 관급 974)
-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4,378.37m²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

< 조 감 도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4,004	3,421	583	14.6

주요 심사내용

수량 오류사항 조정

- 무대 독립벽체의 블랙C형강 단위 중량이 부적정하게 적용되어 조정($5.684\text{ton/m}^2 \rightarrow 0.00568\text{ton/m}^2$)

핸드레일(계단)설치 인건비 이중 계상 조정

- 핸드레일 설치공종은 일반철제류의 잡철물제작설치로 계상되어야 하나 잡철물제작 + 난간설치로 이중 계상되어 난간 설치비를 삭감 조정

거래실례가격 적용

- 시공단가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 조립식 강관동바리 : $137,403\text{원}/10\text{공m}^3 \rightarrow 55,000\text{원}/10\text{공m}^3$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심사 착안사항 〉

- 설계도서와 내역서간 수량이 일치하도록 확인
- 해당 공종의 내용 이해 및 숙지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유의

○○사 극락보전 보수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775백만원(도급액 775)
- 규 모 : 지상 1층, 연면적 75.61m²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775	642	133	17.2

주요 심사내용

- 수량 오류사항 조정
 - 내부수평비계 면적 오류 조정 바닥연면적의 90% 적용
(298.8m² → 54.9m²)
- 중복적용 조정
 - 단청가설공사는 내부수평비계와 중복되어 삭감 조정
(209m² → 0m²)

● 보고서 작성 기간 조정

- 준공수리 보고서 용역수행기간이 공사기간에 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어 조정(270일 → 180)

■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심사 착안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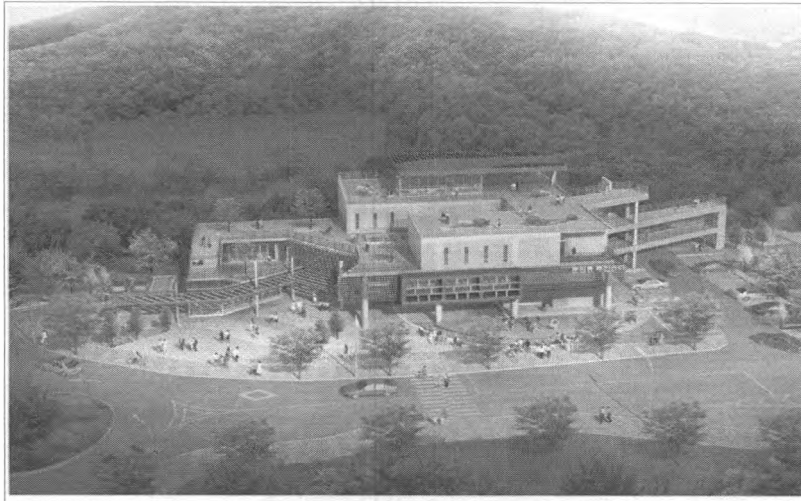
- 중복 과다설계 공종 확인
- 해당 공종의 내용 이해 및 숙지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유의

○○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3,234백만원(도금액 2,652 관급 582)
- 규 모 :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2,342.34㎡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조 감 도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652	2,205	447	16.9

주요 심사내용

중복 공정 적용 조정

- 조립식 가설울타리는 기 설치되어 있어 중복 삭감 조정
(260m → 0m)
- 보호모르타르 바닥 27mm 별도의 마감 공정이 있어 중복
삭감 조정 (1,507m² → 0m²)

품셈적용 부적정 조정

- 베이스 패널 설치 표준품셈 적용이 부적정하여 조정
 - 조적공 0.22인/m² → 0.16인/m²
 - 보통인부 1.12인/m² → 0.06인/m²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설계도서 와 현장 확인으로 중복오류사항 확인
- 표준품셈의 내용을 숙지하여 인건비 과다계상 예방

○○사 대응보전 해체보수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928백만원(도급액 928)
- 규 모 : 지상 1층, 연면적 99.19m²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928	652	276	29.7

■ 주요 심사내용

- 거래실레가격 적용
 - 벽화보존처리에 대하여 거래실레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 벽화보존처리 : 218,404,877원/식 → 57,319,745원/식
- 품셈적용 부적정 조정
 - 목공사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적용이 부적정하여 조정

- 축부재 조립(포가있는 건물) → 축부재 조립(다포양식)
- 선연재 조립(포가있는 건물) → 선연재 조립(다포양식)
- 포부재 조립(포가있는 건물) → 포부재 조립(다포양식)
- 앙토회반죽 바르기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적용이 부적정하여 조정
 - 한식미장공 0.2인/㎡ → 0.09인/㎡
 - 한식목공조공 0.2인/㎡ → 0.09인/㎡
 - 보통인부 0.2인/㎡ → 0.04인/㎡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공종별 표준품셈 내용 확인
- 물가조사기관 공표 단가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재조사

○○시 만화특화거리 조성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690백만원(도금액 690)
- 규 모 : 간판 제작설치 183개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간

< 조 감 도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690	536	154	22.3

주요 심사내용

수량산출 오류

- 프레임 설치 [판류형 중형]Galv. Plate면적 산출오류 조정($21\text{m}^2 \rightarrow 11.5\text{m}^2$)
- 프레임 설치 [판류형 소형]Galv. Plate면적 산출오류 조정($21\text{m}^2 \rightarrow 6.9\text{m}^2$)

재료 할증율 조정

- Galv. Plate 표준품셈에 의거 재료의 할증율 적용 조정 ($20\% \rightarrow 10\%$)

거래실례가격 적용

- 시공단가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 알플렉스 $\text{m}^2/0.68\text{KG} : 200,000\text{원}/\text{m}^2 \rightarrow 170,000\text{원}/\text{m}^2$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심사 착안사항 〉

- 물가조사기관 공표 단가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재조사
- 표준품셈의 내용을 숙지하여 자재비 과다계상 예방

○○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12,555백만원(도급액 10,319 관급액 2,236)
- 규 모 : 지하1~지상4층, 연면적 9,715㎡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 조 감 도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0,319	9,032	1,287	12.5

주요 심사내용

거래실례가격 적용

- 시공단가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 세라믹외장패널/옹벽有 : 210,000원/㎡ → 180,000원/㎡
 - 세라믹외장패널/옹벽無 : 210,000원/㎡ → 180,000원/㎡

국토해양부 실적공사비 적용

- 조립식가설울타리(E.G.I) : 52,333원/㎡ → 28,003원/㎡
- 철근현장가공 및 조립 : 376,063원/㎡ → 366,967원/㎡

중복과다계상 조정

- 터파기공사 토목내역서와 중복되어 삭감 조정 (21,892m³ → 0m³)
- 잔토처리 토목내역서와 중복되어 삭감 조정(15,947m³ → 0m³)
- 되메우고 다지기(토사) 토목내역서와 중복되어 삭감(5,945m³ → 0m³)
- 되메우고 다지기(토사) 토목내역서와 중복되어 삭감 (5,945m³ → 0m³)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및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물가조사기관 공표 단가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재조사
- 건축공사와 부대시설 공사(토목, 전기, 기계 등)간의 중복설계 확인

○○군 그린 빌리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1,030백만원
- 규 모 : 지상1층 연면적 858.14m², 숙소 11동 기타 3동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간

< 조 감 도 >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030	836	194	18.8

주요 심사내용

거래실례가격 적용

- 돔하우스 전문업체 시장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조립 시공 가격으로 적용
 - 돔하우스공사 : 530,155,582원/식 → 444,838,000원/식

중복과다계상 조정

- 시멘트액체방수 돔하우스 견적서내 포함 내역서와 중복되어 삭감 조정($856\text{m}^2 \rightarrow 276\text{m}^2$)
- 메탈라스불임 돔하우스 견적서내 포함 내역서와 중복되어 삭감 조정($1,070\text{m}^2 \rightarrow 0\text{m}^2$)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2010년)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및 공종 및 단가

〈 심사 착안사항 〉

- 물가조사기관 공표 단가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재조사
- 설계도면 및 견적서를 비교하여 중복 과다계상 예방

3. 설비공사 분야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기계)

사업개요

- 사업비 : 1,238백만원(도금액 413, 관금액 825)
- 규 모 : 처리용량 270m³/일 하수처리기계설비 설치공사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413	320	93	22.5

주요 심사내용

- 송풍기 설치품 조정
 - 일반용(소용량) 송풍기설치에 따른 설치품을 산업용(대용량) 설치품으로 계상되어 인건비 조정
- 종합시운전비 조정
 - 하수처리시설 종합시운전비를 전문업체 견적단가로 과다 설계되어, 공법사 선정시 공법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기술 제안서에 의거 투입계획 인원 및 수질분석 횟수 등을 적용

● 자재단가 조정

- 호이스트(1ton) : 19,500,000원/대 → 18,500,000원/대
- 기타 STS 강관(300A×4.5T) 등 119종 단가조정

● 종합시운전비 조정

- 투입인원 및 수질분석 등 기술제안서 내용으로 조정
 - 중급기술자 환경 63인 → 23인, 중급기술자 기계 48인 → 14인
 - 수질분석유입수 8회 → 5회, 수질분석 방류수 28회 → 7회 등
- 시운전 조정기간 4개월에서 3개월로 적용

❧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2011 설비 표준품셈·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2011년 대한설비건설협회 일위대가 적용

< 심사 착안사항 >

- 작업 공정상 일반기계공사 및 플랜트 기계공사 적정여부를 검토
- 종합시운전비 내역이 공법사 선정시 공법심의위원회에 제시된 내역과 일치여부 확인·검토하여 적정단가 적용
- 인건비 공량 산출시 적용품셈 적정여부 검토

○○○시 ○○체육공원 조성공사(기계)

사업개요

- 사업비 : 281백만원(도급액 170 관급액 111)
- 내 용 : 기계장비·배관설치, 위생배관 및 연도설치공사 등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70	133	37	21.8

주요 심사내용

- 현장 여건에 따른 표준품셈 적용 조정
 - 설계압력 5kg/cm² 미만의 밸브는 『기계실배관 및 일반배관의 시공과 보수』의 품을 적용하여야 하나, 『플랜트 설비공사』 품을 적용하여 이에 따른 조정
 - 배관지지대는 ㄱ형강등을 단순 설치하는 작업으로 『잡철물 제작설치』 품을 『잡철물 제작』 품으로 조정
 - PEM 접합시 사용하는 발전기 사용량 조정
 - 공사장 주변여건을 감안, PEM 접합시 사용하는 용착기는 일반 공 사용 전기를 활용함이 타당함에 따라 발전기 사용료 삭제

● 자재단가 조정

- 진공온수보일러(LNG, 250,000KCAL) : 18,150,000원/대 → 9,405,000원/대
- 기타 지하저수조(SMC, 4000W*6000L*3000H) : 25,063,000원/대 → 18,214,200원/대 등 38종 조정

☞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2011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 2011 년도 조달청 가격 정보 및 물가정보지 적용
- 2011 년도 대한설비건설협회 적용

〈 심사 착안사항 〉

- 작업 공정상 불필요한 품셈 포함여부를 검토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조사지를 활용한 적정단가 적용
- 견적단가는 전문업체의 거래 실례가격 등을 조사하여 적정가 검토
- 인건비 공량 산출시 적용품셈 적정여부

기계실 냉동기 교체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937백만원(도급액 659, 관급액 278)
- 내 용 : 기계장비·배관설치, 연도설치 및 자동제어공사 등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659	567	92	14.0

■ 주요 심사내용

- 배관공사 설치품 조정
 - 공동구 내 배관 설치 품을 “옥내 배관공 품”을 적용하였으나, 「기계설비 표준품셈」 규정에 따라 “옥외 및 암거내 배관공 품”으로 조정(옥내 배관공 품의 90%적용)
- 기계설비 철거비 조정
 - 기계설비 철거비를 전문업체 견적단가로 적용, 과다 설계되어 「기계설비 표준품셈」 규정에 따라 조정

● 공사원가 제비율 조정

-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공사에 해당되나, 『공사원가 제비율』을 종합건설공사로 적용되어 조정

● 자재단가 조정

- 냉각탑(400R/T) : 23,200,000원/대 → 22,040,000원/대
- 기타 버터플라이밸브(D200)등 56종 단가조정

■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2011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2011년 대한설비건설협회 적용

〈 심사 착안사항 〉

- 해당 공정에 적용된 표준품셈 적정 여부 검토
- 자재수량 등이 도면,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와 일치 여부
- 원가계산시 적용되는 제비율의 적정여부 검토
- 견적자재는 전문업체의 거래 실례가격 등을 조사하여 적정가 검토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전기)

사업개요

- 사업비 : 1,649백만원(도금액 1,649)
- 규 모 : 전력 간선공사 및 계측제어공사 등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649	1,281	368	22.3

주요 심사내용

- 일위대가 및 공량산출 조정
 - 특고압 케이블 및 고압케이블 전력간선설치 공량은 각각 동시 포설되어 특고압 케이블 3열 동시포설 86.67%, 고압 케이블 4열 동시포설 85%를 적용하여야 하나, 100%로 계상함으로써 과다 산출된 인건비 공량 조정
 - 본 공사의 접지공사케이블 포설 공정은 접지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옥내 내열전선 설치품으로 계상함으로써 과다 계상된 인건비 공량 조정

- 폴리에틸렌 전선관 공량은 합성수지 전선관 기준 80%이며 이를 지중매설시 70%를 추가 공제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100%로 계상함으로써 과다 산출된 인건비 공량 조정

● 물량 내역서 조정

- 철거 케이블 수량이 도면과 내역서간 불일치로 조정 등
 - 22.9kV FR CN/CV 1C×60mm² : 510m → 1474m
 - 0.6/1kV F-CV 1C 70mm² : 96m → 156m
- ⇒ 철거케이블 구리수량 : 40kg → 5,361kg

❏ 법규 및 적용기준

-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2011년)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전기공사업법(2011년)

〈 심사 착안사항 〉

- 품셈에 의거 공량산출시 하단의 「해설」 부분을 상세히 해석하여 적용 여부
- 자재수량 등이 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와 일치하여야 하나 불일치 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비교 후 적용 여부

○○○○ 택지개발사업 터널전기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2,007백만원(도금액 2,007)
- 규 모 : 수변전실, 동력설비, 터널전등, 가로등설비공사 등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007	1,676	331	16.5

주요 심사내용

- 일위대가 및 공량산출 조정
 - 방전등기구 전력케이블 설치 공량은 각각 동시 포설되어 85%(4열 동시포설)를 적용하여야 하나, 100%로 계상함으로써 과다 산출된 인건비 공량 조정
 - 방전등기구 설치품에는 등기구, 안정기 설치 및 장내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셋트앵커 설치품을 별도 계상하여 등기구 설치품을 과다 산출된 인건비 공량 조정 (셋트앵커 설치품 제외)

- 터널등(무전극등) 설치품은 직부등 설치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투광기 설치품으로 계상함으로써 과다 산출된 인건비 공량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2011년)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전기공사업법(2011년)

〈 심사 착안사항 〉

- 품셈에 의거 공량산출시 하단의 「해설」 부분을 상세히 해석하여 적용 여부 검토
- 터널등 설치품은 방전등 종류 및 설치도를 확인, 설치비 적용 검토

○○간 도로 확·포장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4,999백만원(도금액 4,999)
- 규 모 : 가로등 653본, 제어반 22대, 통합주 58본, 신호등 공사 등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4,999	3,621	1,378	27.6

■ 주요 심사내용

- 일위대가 및 공량산출 조정
 - 지하도 인입 전력간선설치 공량은 옥외로 적용하여야 하나, 옥내로 계상함으로써 과다 산출된 인건비 공량 조정
 - 전선관 및 신호등 전선관 공사의 공량이 내선 및 옥외매설 품으로 이중계상되어 내선 설치 품으로 계상된 인건비 공량을 제외함

● 주요자재 조정

- 가격정보 및 시장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 법규 및 적용기준

-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2011년)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전기공사업법(2011년)

〈 심사 착안사항 〉

- 품셈에 의거 공량산출시 하단의 「해설」 부분을 상세히 해석하여 적용 여부
- 각종 공량은 일위대가 및 공량산출근거를 확인하여 이종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 확인

○○○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통신)

사업개요

- 사업비 : 531백만원
- 규 모 : 현장시스템 구축, 통신배선 공사, 소프트웨어 개발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531	391	140	26.4

주요 심사내용

- 주요자재 단가조정
 - 버스정보안내기 함체 등 현장시스템의 주요자재 단가가 업체의 공표가격으로 설계되어 함체제작 전문업체에 대한 적절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단가 조정
 - ☞ 함 체 : 5,400천원/대 → 1,700천원/대
 - 서지흡수기(10KA) 등 21종 단가 조정

● 노무비 표준품셈 적용 조정

- 광케이블 포설, 국내성단, 접속, 누전차단기, 접지선, 접지봉
설치노무비 표준품셈 적용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2011년)

〈 심사 착안사항 〉

- 자재비는 전문 업체의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적정단가 적용 검토
- 원가계산 시 설계도면 및 현장 여건을 정확히 숙지하여 노무비의 표준
품셈 적용 여부

○○ U-City 통합운영센터 구축(통신)

사업개요

- 사업비 : 6,646백만원
- 규 모 : U-City통합관제, 방법 상황실, 네트워크구축 공사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6,646	5,692	954	14.4

주요 심사내용

- 주요자재 단가조정
 - LED, DLP, CUBE 등 주요자재 단가가 업체의 공표가격이 적용되어 있어 CUBE제작 전문업체에 대한 적정한 거래실례 가격을 조사하여 단가 조정
 - ☞ LED DLP CUBE(50") : 42,000천원/대 → 33,000천원/대
 - 시스템 랙(19") 등 16종 단가 조정

중복계상된 노무비 조정

- 시스템 랙, 오디오 믹서, 무선마이크 리시버, 개인용 컴퓨터는 현장 설치도(장비가에 설치비 포함)로 중복 계상된 설치 노무비 삭감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2011년)

〈 심사 착안사항 〉

- 자재비는 전문업체의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적정단가 적용 검토
- 원가계산 시 설계도면 및 현장 여건을 정확히 숙지하여 중복계상 여부 확인

○○○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통신)

사업개요

- 사업비 : 610백만원
- 규 모 : 현장 시스템 구축, 통신배선 공사, 소프트웨어 개발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610	530	80	13.1

주요 심사내용

- 주요자재 단가조정
 - D.V.R 등 주요자재 단가가 업체의 공표가격이 적용되어 있어 전문 업체에 대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단가 조정
 - ☞ D.V.R(32CH) : 6,000천원/대 → 3,273천원/대
 - UTP케이블(4P) : 950원/m → 287원/m

● 제비율(이윤) 조정

- 원가계산 제비율 산정시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노무비 대신 재료비로 산정 적용하여 47백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변경 조정

■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2011년)

〈 심사 착안사항 〉

- 자재비는 전문 업체의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적정단가 적용 검토
-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제비율 적용기준 확인

4. 용역 분야

○○수목원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271백만원
- 규 모 : 조성면적 1,116천m², 건축연면적(9개동) 3,963m²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71	153	118	43.5

■ 주요 심사내용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의거 조정
 - 대가기준에서 ‘직접인건비’ 산출은 소요인력 산정기준과 사업규모(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계시 적용 계상한 과업소요기간 3.33년은 미반영
 - 인건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기술료 감액
 - ※ 제경비 : (직접인건비)*110%,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

법규 및 적용기준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 심사 착안사항 〉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에 따라 직접인건비
소요공수 등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확인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 사업개요

- 사업비 : 398백만원
- 규 모 : 용량 279천m³/일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398	315	83	20.9

■ 주요 심사내용

- 기 실시된 용역결과 활용으로 소요작업량 조정
 - 시흥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2010. 12월)」을 활용할 수 있어 '타당성조사'소요작업량 조정(100% → 60%)
 - 조정항목(5개) : 자료조사(3항목), 시설계획(2항목, 시설현황, 시설개량계획)
- 인쇄비 조달청 기준으로 조정
 - 보 고 서 : 300매 × 12,150원 → 300매 × 7,000원
 - 보고서(부록) : 500매 × 12,150원 → 500매 × 7,000원

법규 및 적용기준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 협회 수수료 공표

〈 심사 착안사항 〉

- 기 수립된 전차 용역과의 과업 중복여부 확인
- 보고서 인쇄비는 조달청 경인쇄기준 등의 조판생략 여부 확인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관리

■ 사업개요

- 사업비 : 252백만원
- 규 모 : BIS구축사업 법정감리, 시스템 성능평가 및 품질관리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52	216	36	14.3

■ 주요 심사내용

- 연구 참여율 및 적용 인건비 기준 조정
 - 조사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의 노임단가를 공사부분 보통인부 (70,497원)→제조부분 보통인부(53,160원)으로 조정
 - ‘연구보조원’의 참여율을 과업완성도에 맞게 조정하고, 원고 정리 등 단순 업무처리 보조원(2명→1명)으로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행안부예규)

〈 심사 착안사항 〉

- 과업수행내용에 따라 조사업무 투입인원의 단가적정여부 확인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 수행하는 보조원수의 적정여부 확인

자전거 이용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 사업개요

- 사업비 : 300백만원
- 규모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및 연도별 활성화 계획, 안전성 확보 방안 등

■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300	244	56	18.7

■ 주요 심사내용

- 비영리법인과의 학술용역 추진에 따른 이윤 삭감
 - 수의계약 대상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은 정부 출연기관(비영리 법인)으로 이윤 삭감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예규 제332호)」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따라 이윤 삭감
 - 과업기여도 및 완성도에 맞게 참여인원 조정
 - 보조원(단순 원고정리 및 타자) 2인→1인

● 과다 계상된 경비 조정

- 유인물비는 조달청 산출기준 및 과업지시서의 분량으로 조정
- 과업내용에 맞게 조사원 노임단가 조정
 - 조사원 공사노임 보통인부(72,415원)→ 제조부문 보통인부(53,160원)
- 회의비는 최소 소요경비로 조정 (20천원/인→5천원/인)

■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행안부예규)

< 심사 착안사항 >

-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학술용역 추진할 경우 이윤 미반영
- 과업수행내용에 따라 조사업무 투입인원 및 적용 단가의 적정 여부 확인
- 인쇄비의 조달청 인쇄비 기준 및 과업내용의 적정여부 확인

○○성 5차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개요

- 사업비 : 203백만원
- 규 모 : 정밀조사 619m²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03	184	19	9.4

주요 심사내용

- 잘못 적용된 인건비 보정계수 조정
 - 유구내용 보정계수 '작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쉬운 경우'로 변경 적용
 - ☞ 유물내용(유구당 5점이하, 최저치), 유구밀도(낮음), 유구식별(쉬움)
- 환경요인 보정계수 조정
 - 지형 : '표토굴삭' 조사원 1.1→1.0, '기록작성' 보조원 1.1→1.0, '유구내부 정밀조사' 준조사원 1.0→1.1

- 유물내용 : '사전준비' 보조원 0.5→0.4
- 유구밀도 : '유구내부 정밀조사' 조사단장 1.0→0.9/준조사원 1.0→0.9, '기록작성' 조사단장 1.2→0.9, '유구확인 굴삭' 0.7→0.5

● 과다 계상된 직접경비 조정

- 현장조사인부는 모두 공사부분 보통인부로 조정
 - ※ 작업반장 98,329원/일, 보통인부 72,415원/일
- 토사처리 공사원가는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따라 조정
 - 토사절취적용계수중 K를 0.9(불량)→1.1(양호)
-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를 산지(1.3)→구릉지(1.25)로 조정

■ 법규 및 적용기준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시준(문화재청 고시 제 2011-67호)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행안부예규)

< 심사 착안사항 >

- 인건비 부문
문화재발굴 용역은 지표, 시굴,정밀 부분으로 분류되어 각각 품셈 적용하며, 정밀조사의 경우 「면적」, 「환경요인」, 「유적분류」의 보정계수 적용여부 확인
- 경비 부문
 - － 현장조사인부임 적용단가 계상여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획 및 설계

사업개요

- 사업비 : 1,551백만원
- 규 모 :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
설계 ($A=238,439\text{m}^2$)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551	1,271	280	18.1

주요 심사내용

- 소요인력 등 잘못 적용된 계수 변경
 - (사전환경성검토)기준면적 변경($10\text{만m}^2 \rightarrow 25\text{만m}^2$)에 따른 인건비 조정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표준원단위는 일반사업계획 적용,
보정계수($1.30 \rightarrow 1.24$)조정
 - (지형현황측량) 작업량 계수 조정 $1.0(10\text{만m}^2) \rightarrow 0.9(20\text{만m}^2)$ 조정
 - (문화재지표조사) 제경비율 $120\% \rightarrow 110\%$ 조정

● 과다 계상된 직접경비 조정

- 기본설계(88억, $A=24\text{만 m}^2$)후 일부면적(67억, $A=67\text{억}$)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나, 기본설계와 동시에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를 적용
- 적용근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 공원기본설계비는 기반시설기본설계와 중복되어 전액 감액

☞ 법규 및 적용기준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방재문야 표준품셈(소방방재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 건설표준품셈

< 심사 착안사항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대상사업 기준면적 확인
- 각 대가기준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오류 계상 여부 확인
- 각각 계상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적정여부 확인
- 설계비의 중복계상 여부 확인

○○시 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

사업개요

- 사업비 : 956백만원
- 규 모 : 측량결과도 94,589매, 토지이동결의서 781,913매,
면적측정부 57,702매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956	817	139	14.5

주요 심사내용

작업량 및 투입인력 조정

- ‘자료준비’ 및 ‘스캔 및 보정’의 1일 작업량 조정
 - 자료준비 : 37.3권/일 → 68권/일
 - 일반스캔 : 1,898면/일 → 3,785면/일 이미지 보정 : 1,611면/일 → 3,222면/일
 -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2호)의 [별표19]
- ‘일반스캔’ 작업의 투입인력은 작업수준과 타 시군 적용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 중급기능사(110,637원) → 자료입력원(69,680원)

- '마이크로 필름제작' 1일 작업량을 타·시·군 적용수준으로 조정
· 직접촬영 제작 : 700면/일 → 2,000면/일, COM 제작 : 2,000면/일 → 10,000면/일

● 과다 계상된 직접경비 조정

- 작업용 PC·스캐너 감가상각비 정액법에 따라 계산
· 작업용PC 60,000원/월 → 16,833원/월, 스캐너 700,000원/월 → 428,333원/월
- 35mm복제용 마이크로필름(부분) : 120천원 → 100천원

■ 법규 및 적용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 같은 사업의 타 시·군 작업량 및 투입인력 비교

< 심사 착안사항 >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에 맞게 작업량이 산출되었는지 확인
- 같은 사업의 타 시·군 설계내역과 비교하여 작업량과 투입인력의 적정여부 확인

○○○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 사업비 : 207백만원
- 내 용 : 재정비사업 추정사업비 및 개략분담금 산정 포탈 사이트 구축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07	167	40	19.3

주요 심사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기능점수 조정
 - 기능점수 : 353.2 → 309.8
 -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제6~8조 적용
- 유형별 보정계수 산출 오류 조정
 - 보정계수 : 1.04 → 0.91

법규 및 적용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2호)

〈 심사 착안사항 〉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의 적정 적용 여부 검토

5. 물품 · 인쇄 분야

○○신도시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

사업개요

- 사업비 : 2,879백만원
- 규 모 : 버스승강장 100개소(기본형 94개소, 확장형 6개소)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879	1,989	890	30.9

주요 심사내용

자재비 조정

- 자재단가를 거래실례가격 조사하여 조정 : 강화유리 등 18종
 - 강화유리(THK 8M/M*칼라) : 27,500원 → 21,960원
 - STEEL PIPE(□100*100*3.2) : 11,290원 → 10,310원

설치비 조정

- 일위대가 및 수량 산출 조정 : 쉘터 제작설치 품 등 6종
 - 잡철물제작설치 품 적용 구조 : 보통구조→간단구조(기계품샘1-9장)
 - 시트지붙이기 품 : 특별인부 0.5인 →도배공 0.02인 보통인부 0.5인→0.02인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 적용 : 일반관리비 등 8개 비목
 - 일반관리비 : $(\text{재료비} + \text{노무비} + \text{경비}) \times 7\% \rightarrow (\text{재료비} + \text{노무비} + \text{경비}) \times 5.5\%$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심사 착안사항 〉

- 기자재비는 전문업체의 거래실계가격을 조사하여 적정단가 적용 검토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정 반영 여부 검토

어린이 보호구역 생활안전용 CCTV구매설치

사업개요

- 사업비 : 42백만원
- 규 모 : CCTV 8대, 센터 설비 1식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42	33	9	21.4

주요 심사내용

- 자재비 조정
 - 전문업체 거래실례가격 조사하여 조정 : 고정형카메라 등 16종
 - 고정형카메라(41만화소,6-12mm렌즈) : 840,000원 → 830,000원
 - 비디오서버(4Ch, D1) : 2,700,000원 → 1,600,000원
 - 제어함체(전천후2중구조,SUS,Rack) : 1,000,000원 → 750,000원
- 설치비 조정
 - 일위대가 및 수량 산출 조정 : 케이블 설치 등 9종
 - 케이블, 비디오서버, 제어함체, 카메라아암, 스피커, 서지프로텍터 설치 품 조정

● 제비율 조정

- 안전관리비 : 감액(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감액(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11.5% → 직접노무비 x 10.4%

■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심사 착안사항 〉

- 기자재비는 전문업체의 거래실계가격을 조사하여 적정단가 적용 검토
- 현장설치 품에 대해서는 표준품셈 및 납품조건 등을 고려하여 과다계상 여부 검토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정 반영 여부 검토

○○ 기존 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구매 설치

사업개요

- 사업비 : 340백만원
- 규 모 : 수중축류펌프 2대, 부대설비 1식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340	260	80	23.5

주요 심사내용

자재비 조정

- 전문업체 거래실례가격 조사하여 조정 : 수중축류펌프 등 4종
 - 수중축류펌프($\phi 800 \times 80 \text{m}^3/\text{min} \times 7 \text{m}$) : 117,600,000원 → 95,000,000원
 - 컬럼파이프(SS41) : 15,000,000원 → 14,000,000원
 - 모니터링유닛(TP, SS, BS) : 1,600,000원 → 1,500,000원
 - 고철(기존펌프 철거 고재) : 470원 → 600원

● 설치비 조정

- 수중펌프 설치 품 조정 : 원심펌프 설치 품 → 수중펌프 설치 품
- 펌프 납품조건이 수요자 지정장소 납품으로 별도 계상된 펌프 장비비 및 운반비 감액

■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심사 착안사항 〉

- 자재비는 전문업체의 거래실계가격을 조사하여 적정단가 적용 검토
- 현장설치 품에 대해서는 표준품셈 및 납품조건 등을 고려하여 과다계상 여부 검토

○○종합사격장 개·보수 관련 물품구입

사업개요

- 사업비 : 1,026백만원
- 규 모 : 결선용 전자표적 등 27종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026	864	162	15.8

주요 심사내용

- 거래실레가격 적용
 - 거래실레가격 조사에 근거하여 가격 조정
 - 전자표적 (30대) : 600,000천원 → 474,100천원
 - 현수막걸이(1식) : 20,500천원 → 17,325천원
 - 9×5.6파고라(2대) : 41,000천원 → 34,540천원

●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품목으로 적용

●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품목 가격으로 조정

- 4×4파고라(2대) : 27,300천원 → 19,580천원

※ 나라장터물품식별번호 : 21527624(조달수수료 제외)

- 10×4파고라(1대) : 30,800천원 → 24,230천원

※ 나라장터물품식별번호 : 21514760(조달수수료 제외)

❏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심사 착안사항 〉

- 관련 전문업체 대상으로 거래실례가격 조사 비교
-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품목 여부 검토

도민 평생학습 e-러닝 교육과정 인쇄물 제작

사업개요

- 사업비 : 38백만원
- 규 모 : 포스터 10,000부, 리플릿 20,000부 전단지 50,000부, CD 제작 5,000장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38	22	16	42.1

주요 심사내용

-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재료비 조정
 - 거래실례가격 및 과업내용에 맞게 용지단가 조정
 - 스노우화이트(150g/㎡) 단가 : 107,000원/1연 → 97,600원/1연
 - 용지량은 인쇄물 규격 및 제본방식에 적정하도록 조정
 - 표지: 46전지5연 → 국전지267연 내지 용지량: 46전지 40연 → 국전지 21.33연

● 과다 계상된 경비 조정

- 출력방식을 변경(CTF→CTP) 적용하여 필름 출력비 제외하고, 인쇄판비 단가 50% 가산 적용
- 임의 산정한 기획 편집료는 2011년 노임단가(전자편집 디자인)를 적용하여 조정
 - 기획편집료 : 1,000,000원 → 258,000원(86,000원 × 3일)

● 일반관리비 요율 적용

- 행정안전부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상 일반관리비율 한도(10%)를 적용하여 조정
 - 일반관리비율 12% → 10% 조정

❧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 심사 착안사항 >

- 인쇄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쇄물 재료의 적정성 검토
- 인쇄출력방식(CTF,CTP) 산정의 적정성 검토
- 행정안전부 계약심사 업무지침 적용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홍보인쇄물 제작

■ 사업개요

- 사업비 : 19,475천원
- 내 용 : 포스터, 리플릿, 전단지 제작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9,475	9,260	10,215	52.5

■ 주요 심사내용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적용
 - 물가정보지에 의한 용지단가 조정 및 과다 산정된 용지량 조정
 - 용지량에 의한 통수 조정 및 국배판인쇄 감산(20%) 적용
- 출력방식 변경 및 기획편집료 조정
 - 출력방식을 변경(CTF → CTP) 적용하여 필름출력비 제외
 - 임의산정한 기획편집료를 2011년 노임단가(전자편집디자인) 적용하여 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2005년)

〈 심사 착안사항 〉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적용
- 출력방식 변경적용 및 전자편집디자인공 노임 적용

III. 부 록

순 서

1. 경기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 2008.10.02. 규칙 제3338호

개정 2009.02.18. 규칙 제335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실·과·담당관

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도 의회사무처

라. 도의 지방공기업

마. 도의 공공기관

바. 시·군(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을 포함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①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5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계약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액사업 (이 경우 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는 계약부서에서 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군의 대상사업은 국비·도비 보조사업에 한한다. 다만, 시·군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제4조(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한하여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

1.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2.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9.2.18.]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8.>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2.18.>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설계가격 : - 관 금 비 : - 기 타 :		· 금회 공사비 : 천원 - 설계가격 : - 관 금 비 : - 기 타 :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 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임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 설계가격 : 기술 또는 설계담당 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별지 제3호서식]

(2-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구매내역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기타 시장제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2-2)

물품구매 산출기초 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2-1)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제조(수리)내역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각 1부.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별지 제5호서식]

(2-1)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x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묘단·양면, 내지 묘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시양 : 8. 기 타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절(mm x mm)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용비용:도표,일러스트등)		
○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2)

인쇄물(편집·기획) 산출기초 조사서

°품 명 :

°산출근거 :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 쇄 판 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획 료 또 는 디 자 인 비			인쇄물 기획·편집 시 작성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가치세만 가산 적용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 제2절 추정가격
- 제3절 예정가격

제2장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 제1절 기초금액 작성
- 제2절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제3장 감정가격·견적가격·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 제1절 감정가격
- 제2절 견적가격
- 제3절 거래실례가격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 제1절 총칙
- 제2절 제조원가계산
- 제3절 공사원가계산
- 제4절 학술용역원가계산
- 제5절 기타용역원가계산

제5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 제1절 실적공사비
- 제2절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산정

제6장 원가계산관련기관

- 제1절 원가계산용역기관
- 제2절 원가검토기관

제7장 보칙

- 제1절 특례사항
- 제2절 자료의 비치 등

부 칙 /

※ 별첨자료 /

별지 제1호서식 제조원가계산서 별지 제2호서식 공사원가계산서
별지 제3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별지 제5호서식 실적공사비 총괄집계표
별표1 일반관리비율 별표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별표3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1. 목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작성, 공사손해보험 가입, 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포기구의 등록 등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작성방법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제2절 추정가격

1. 추정가격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제3절 예정가격

1.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 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1) 시·도 및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 2) 관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기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3.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가. 작성절차

-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 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예정가격의 결정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5. 예정가격산정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 :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기타공사 : 8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임차나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3)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8.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과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장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제1절 기초금액 작성

1. 기초금액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등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내에서 7개, 0%~-3%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2.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천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천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천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2인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천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3.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제3장 감정가격·견적가격·거래실레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제1절 감정가격

1. 감정가격

감정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의 결정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원 이하 또는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도 예정가격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절 견적가격

1. 견적가격

견적가격이라 함은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2.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 또는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거래실례가격

1. 거래실례가격의 개념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담당자가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2. 거래실례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나.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가” 또는 “나”에 가격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라.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3.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 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계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총칙

1. 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에 관하여는 제6장의 규정에 의한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재료비=재료량×단위당가격
- 노무비=노무량×노무비 단가
-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7장 제2절 1.”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예규에 따라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절 제조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료비

가. 재료비의 구성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를 말한다.

나.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외주가공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다.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라.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마.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노무비의 구성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나. 직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간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나”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 “나”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공 식 >

$$\text{직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 단가}$$

마. “다”의 간접노무비는 “제7장 제2절 1.”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공 식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바. “마”의 간접노무비는 “라”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제조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의 개념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7장 제2절 1.”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

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입차료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 및 공과금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

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입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7.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절 공사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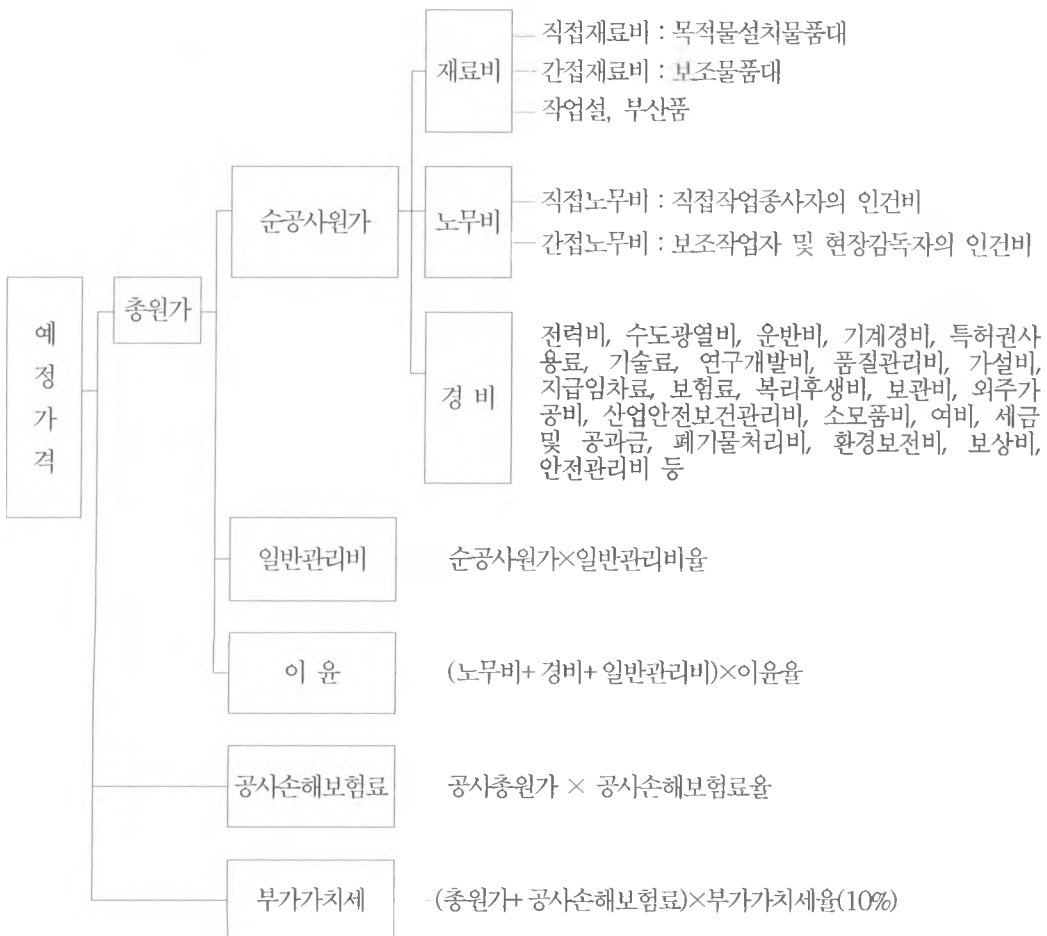
1. 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사의 원가체계



4. 재료비

가. 재료비의 구성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를 말한다.

나.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외주가공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다. 간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라.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마.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4장 제1절 3.”과 “제4장 제2절 4.”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begin{array}{c} < 공 & & 식 > \\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end{array}$$

나) 계상방법

-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 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 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계상한다.
- (2)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begin{array}{c} < 공 & & 식 >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end{array}$$

나) 계상방법

-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②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③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④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3)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상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 고
공 사 종 류 별	건 축 공 사	14.5	
	토 목 공 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5	
공 사 규 모 별	50억원 미만	14	
	50~300억원 미만	15	
	300억원 이상	16	
공 사 기 간 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text{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7장 제2절 1.”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험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4장 제3절 9.”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

급되는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 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 및 공과금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

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장 제2절 4-나-(4)”와 “제4장 제3절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4장 제2절 6.”과 같고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6.0	5억원 미만	6.0
50억원~300억원 미만	5.5	5억원~30억원 미만	5.5
30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 공 식 >

$$\text{공사손해보험료} = \text{총공사원가} \times \text{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10. 공사손해보험 가입

가. 근거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나. 보험의 가입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공사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 중 다음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 또는 길이 500m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
 널이 포함된 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
 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
 전공사

다. 보험가입의 범위

“나”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라. 보험가입금액

- (1)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2)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1)”의 순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가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 (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1)”과 “(2)”에 따라 산정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4)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게 하여야 한다.

바. 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 (1) “나”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완료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2)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게 하여야 한다.

사. 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 (1)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시 행정안전부 예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에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보험료 계상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의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 (4)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차.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상자가 공사손해보험가입한 후에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카. 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보험금의 사용

- (1)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1)”의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파. 기타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4절 학술용역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내용과 같다.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제4장 제4절 1-가-(2)”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과 “(3)”에 의한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3.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정한 학술

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인건비

가. 인건비의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여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인건비의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계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계상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위원 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4장 제2절 5-다-(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등

가. 일반관리비의 계상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을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원가계산

1.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가”와 “제4장 제4절”의 학술용역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설계감리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행정안전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국토해양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국토해양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기술자 노임단가(지식경제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2)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0)

● 고용보험료

-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0)

● 폐기물처리비

- 1)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2)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8)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 : 계약의 이행보증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0)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0)

● 환경보전비

-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6(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1)

● 품질관리비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4(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7)

● 감가상각비

-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2절 5-다-(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4)

● 안전관리비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안전관리비)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3)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3조
-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4)

● 공사손해보험료

-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4. 손해보험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9.

제5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실적공사비

1. 실적공사비의 개념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의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및 표준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절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산정

1.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의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인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4장 제3절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내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4장 제2절 4-다”와 “제4장 제3절 6”을 준용한다.

- (1) 간접노무비
- (2) 산재보험료
- (3) 고용보험료
-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5) 안전관리비
- (6) 환경보전비
- (7) 국민건강보험료
- (8) 국민연금보험료
-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 (10) 기타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바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제5장 제2절 3”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4장 제2절 6”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6.0	5억원 미만	6.0
50억원~300억원 미만	5.5	5억원~30억원 미만	5.5
30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6.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공사손해보험료

“제4장 제3절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4장 제3절 10. 공사손해보험 가입”의 규정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8.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원가계산관련기관

제1절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이상(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3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3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 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제6장 제1절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장 제1절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동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절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가.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이상(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3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3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장 제2절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검토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중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제6장 제2절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장 제

2절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1절 특례사항

1. 특례설정등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자료의 비치 등

1.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수의계약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계상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동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를 준용한다.

2.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가.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시행기준

가.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1절 1-다”와 “제6장제2절 1-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제도의 폐지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제3절 “2-사”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1년 9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비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별지 제2호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비목					
순 공 사 원 가 비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부 산 물 등(△)			
		소 계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품 질 관 리 비			
		가 설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안 전 관 리 비			
		건 설 근 로 자 퇴 직 공 제 부 금 비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지 제3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역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원 가			

<별지 제4호서식>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까지 「〇〇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〇〇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상의 용역의 내용 및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0000년 00월 00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성 명 : (인)

성 명 : (인)

〇〇시·도 경리관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실적공사비 총괄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 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2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2,915,894원
연구원	월 2,235,867원
연구보조원	월 1,494,604원
보조원	월 1,120,991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12년도 기준단가이며, 2013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별표 3 >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 기술자자격기준	상경계열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이상 산업기사 13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 년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2 년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이상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 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10년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이수후 5년이상, 기능실기시 험 합격후 5년이상, 기타 10 년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이상	

-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5호, 2009. 5.2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조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각각 본다. <개정 2008.2.29>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5.21>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6조 (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

게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 (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0조 (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2조 (입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3조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15조 (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6조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7조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공사
- 2.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8조 (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선금급)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9조 (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임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0조 (계약의 담보책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 검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1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금액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 2.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 ② 제1항제2호의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5조 (단가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단가계약의 범위·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6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조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7조 (개산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概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2.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3.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과의 관세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대상·입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경제정책상 예산을 조기에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산가격 2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개산가격 20억 이상의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개설 및 확장·포장공사

나. 하천공사

다. 상·하수도 관로공사

2. 제1호와 관련된 개산가격 2억원 미만인 설계 및 감리용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법률 제9423호(2009.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8조 (종합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9조 (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간의 공동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30조 (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2.6]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4조 (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5조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6조 (계약절차 등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7조 (심사·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 (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39조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0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1조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立案)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2조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계약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과정·시공품질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2.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지명과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
3. 제13조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

④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평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부칙 <제9685호, 2009. 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법률 제94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16] [대통령령 제23134호, 2011. 9.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낼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7.26]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 법 제9조제1항 단서와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6]

제5조(준용)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1.7.28>

[전문개정 2010.7.26]

제5조(준용)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1.7.28, 2011.12.2>

[전문개정 2010.7.26]

[시행마지정] 제5조

[시행일 : 9999.1.1] 제5조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공익목적에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충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하여 보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자

(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개정 2010.7.26>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제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 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 나. 해당 회계연도 또는 그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 가.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전문개정 2010.7.26]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 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
 4.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
 4.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1조(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변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변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工種別)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43조에 따라 제안서(설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열람시키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설계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⑦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된 공사

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적는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종별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되지 않은 공사: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

⑧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工種別)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감응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43조에 따라 제안서(설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열람시키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설계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⑦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된 공사

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적는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종별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되지 않은 공사: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

⑧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과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로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표시하고,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장기계속계약(「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대상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8조(2단계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6]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1조에 따른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10. 다음 각 목의 인증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납품능력
 -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6]

- 제21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자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입찰참가자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한 입찰참가자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7. 법 제9조제1항 단서와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6]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

려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배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 인정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삭제 <2011.9.15>
 -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 [전문개정 2010.7.26]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의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 인정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표복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계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삭제 <2011.9.15>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전문개정 2010.7.26]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6]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6]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7.26]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

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과 계약금액
4.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개정 2010.7.26>

제33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한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긴급한 경우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전문개정 2010.7.26]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88조제3항에 따른 공동 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5.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1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6]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채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1.1.26, 2011.9.15>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 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5.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채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15>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차.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및 한국자치경영평가원
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 6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채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1.1.26, 2011.9.15>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 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5.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판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15>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차.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및 한국자치경영평가원
 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 6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6]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보증기관과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해당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8.5>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 입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에 규정된 계약이행능력 심사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42조의2(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 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④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심사방법·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② 제1항에서 "추정금액"이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1.9.1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등의 용역업자를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9.15>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⑬ 제12항에 따른 설계서 작성 보상의 지급대상,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세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② 제1항에서 "추정금액"이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판급자제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1.9.15>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등의 용역업자를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

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 수행계획(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9.15>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⑬ 제12항에 따른 설계서 작성 보상비의 지급대상,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예술성·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

할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인 경우: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제42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제49조(계약서의 작성)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6]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 ③ 삭제 <2010.7.26>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 ⑥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 ⑦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①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外資)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 ②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제78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既成)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相計)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할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56조(감독)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에 따른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정해진 감리원(監理員)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드는 감독비용 또는 감리비용은 해당 공사예산 중 낙찰 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10.7.26]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6]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6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감독조서(監督調書)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64조(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그 용역계약의 상대방이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③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할 때에 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 ⑥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을 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56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에서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6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6]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既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방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

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既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이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전문개정 2010.7.26]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 및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5]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 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전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1.9.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15]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 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1.9.15>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15]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

정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⑨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

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⑨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한다.

- 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설계서·규격서 등이 미리 확정된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자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된 금액을 계약서에 덧붙여 적되, 예산의 범위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6]

제79조(단가계약) ①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2. 시설물의 보수·복구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4. 그 밖에 공급·사용·임차·배매 등의 계약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이하 "수요물품"이라 한다)의 계약 상대방을 선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통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1조(개산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한정한다.

1. 도로공사
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護岸) 블록, 전석(?石) 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등을 포함한다)
4. 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전문개정 2010.7.26]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에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와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에서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와 협의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여야 한다.

제86조의2(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의 입찰방법 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87조(종합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88조(공동계약)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공사
나.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2.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

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할 때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2.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가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1.9.15>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

- 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1.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7. 감리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8.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19.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0.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2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⑦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

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⑪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세울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1.9.15>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1.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7. 감리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8.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19.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0.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2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번호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

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⑪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93조(자료 제출 요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94조(적용대상 등)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7.26]

제95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중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중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중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중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란 원안 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6. "기본설계입찰"이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 "입찰안내서"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와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

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안입찰의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작성 후 지체 없이 집행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따라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전문성이 필요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3. 해당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 일괄입찰을 할 때에는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관계서류
3. 원안입찰과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 ③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관계서류
 - 다. 그 밖에 공고 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관계서류
 - 다.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 라.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9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 ⑤ 삭제 <2009.11.26>

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대안입찰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입찰자와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 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 적격 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은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한다)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여러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차례대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

2. 제1호 외의 공사: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제98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98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의 경우 계속비 예산을 초과하고, 일반대형공사의 경우 총공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서 공사의 시급성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 적격 통지가 있을 때에는 제6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래의 산출내역서를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래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장에 따른 계약 사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위탁 후의 이 장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15]

제101조(설계비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02조 삭제 <2007.9.20>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 ③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50/100

3.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전문개정 2010.7.26]

제104조 삭제 <2007.9.20>

제105조 삭제 <2009.8.5>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0.7.26>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심의대상 안전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5>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5>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3억원
4.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고시금액

- ②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

다.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위배된 사항과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3억원
4.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고시금액

②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 다.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위배된 사항과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111조(재심청구)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11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2조(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회계학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갖고 법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급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청구된 사항을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전기·정보통신 등 공사와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과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청구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외의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분쟁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⑦ 제117조, 제118조제2항·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이하 이 조에서 "계약절차의 중지"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18조에 따른 의견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①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9조(조정외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0조(조정) ① 위원회는 청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할 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122조(비용부담) ① 청구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청구에 따른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23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장 보고 및 기타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분기별 발주계획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정보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125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25조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9.15]

[충전 제125조의2는 제125조의3으로 이동 <2011.9.15>]

제125조의3(평가)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이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③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량 설치공사, 지하철(경전철을 포함한다) 공사,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계약이행과정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품질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인 이상의 관계전문

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기술개발·공법개선 등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125조의2에서 이동 <2011.9.15>]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신설 2007.9.20, 2011.9.15>

제126조(적용대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9.15]

제12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9.15>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工期短縮方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9.20]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와 관련하여 제96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5>

②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와 관련하여 제96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집행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본조신설 2007.9.20]

[제목개정 2011.9.15]

제12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9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5>

[본조신설 2007.9.20]

[제목개정 2011.9.15]

제130조 삭제 <2011.9.15>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2조제2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기술제안 적격으로 통지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 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삭제 <2011.9.15>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 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④ 삭제 <2011.9.15>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13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세부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안점수·가격점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15]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삭제 <2011.9.15>
6. 설계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7.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점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15]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

안입찰에 있어서 제1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본조신설 2007.9.20]

[제목개정 2011.9.15]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삭제 <2011.9.15>
6.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관계서류
3. 단가와 수량을 적은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점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15]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 (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1.9.15>

③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과정에서의 가격조정 협의 및 재공고입찰 등에 관하여는 제10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15]

제136조(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138조(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부칙 <제23313호, 2011.11.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4)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⑦ 생략

제10조 생략